#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개정법령의 현황을 중심으로- 




#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br> -개정법령의 현황을 중심으로- 

김 현 수

#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Disqualification Provisions- focusing on Revised Laws and Regulations-

연구자 : 김현수(부연구위원)<br>Kim, Hyun-Soo

$$
\text { 2014. 11. } 30 .
$$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square$ 연구의 배경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보편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필요성의 원 리, 잔존능력의 활용, 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현대적 후견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과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담 보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 도록 종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 하며 정비를 위한 기준 역시 필요한 실정임
$\square$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행위무능력제도의 '격리와 배제'와는 달리 '참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1 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계법령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개정현황을 분석함

○ 이를 통하여 향후 관계 법령 정비의 기준에 대한 추가적 논의 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성에 대한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 주요 내용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사유○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동 시에, 보편성, 필요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이용자에 대한 각종 자격제한과 관련한 기존의 법규정(결격조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 그리고 제정법상 결격사유 규정에 관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함
$\square$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법령의 개정 현황

○ 첫째,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결격조항 개정의 이유에 관해 서는 다수의 법령에서는 단순히 종래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제도로 변경된 사항을 적시하고, 단순히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것으 로 개정이유를 설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둘째, 결격조항의 개정 방식은 다시 일괄치환형, 일부치환형이 다수를 이루었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례 에서 보듯이, 일괄치환 후 하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 식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채택되고 있음

○ 셋째, 동일한 영역 또는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일응 판단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들 상호 간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의 존치 여부 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

2 주제어 : 성년후견제도, 피후견인, 결격조항,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경인


## I . Background and Purposes

BackgroundO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was adopted based on contemporary principles, including principles of normalization, necessity, utilization of remaining capacity, and subsidiarity.

O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t is necessary to modify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at hav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and examine relevant criteria.Purposes

O This research assesses revisions status of those laws and regulations after 1 year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O And it intends to seek the necessity of further discussion and leg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ivil Code in this field.

## П. Main Contents

The adoption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O The goal of the adop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n be achieved from examining and revis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with disqualification provisions which restrict legal capacity of the ward, and establishing relevent criteria.Revised laws and regulations after the adoption of the new guardianship system

O First of all, a great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did not have showed special reasons why they substitute the adult wards and the limited wards for the incompetent and the quasi-incompetent.

O Secondly, many laws and regulations simply substituted the adult wards for the incompetent, and some did the limited wards for the quasi-incompetent with some exceptions in which the Act on Antarctic Activities and the Protection of Antarctic Environment has.

O Thirdly, with respect to the limited wards, many laws and regulations with similar disqualification provisions have differences in their revisions.

D Key Words : adult guardianship system, wards, disqualification provisions, adult wards, limited wards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7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18
제 2 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사유 ..... 19
제 1 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및 취지 ..... 19

1. 민법 개정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 19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기본이념 ..... 24
3. 소 결 ..... 32
제 2 절 결격조항과 성년후견제도 ..... 33
4.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 ..... 33
5.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결격조항 ..... 40
6. 소 결 ..... 43
제 3 장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법령의 개정 ..... 45
제 1 절 성년후견제도와 법령 정비의 논의 ..... 45
7. 결격사유 조항의 정비 기준에 관한 논의 ..... 45
8. 논의의 정리 ..... 50
제 2 절 개정 법령의 현황 분석 ..... 50
9. 서 설 ..... 50
10.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결격조항 개정이유 분석 ..... 51
11. 결격조항 개정의 방식 ..... 56
12. 영역별 결격조항 개정 현황 분석 ..... 59
13. 소 결 ..... 70
제 4 장 결 론 ..... 73
참 고 문 헌 ..... 75
《부 록》
14.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79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79

- 건설산업기본법 ..... 8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80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8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83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84
- 국가공무원법 ..... 85
- 국가정보원직원법 ..... 87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89
- 기술사법 ..... 90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92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9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96
■ 농약관리법 ..... 102
■ 농어촌정비법 ..... 103
■ 담배사업법 ..... 10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108
■ 도선법 ..... 109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110
■ 도시철도법 ..... 112
■ 동물보호법 ..... 113
■ 디자인보호법 ..... 116
$\square$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11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20
■ 말산업 육성법 ..... 124
（⿴囗口ㄴ 법 ..... 126
－발명진흥법 ..... 128
$\square$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1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31
（ 변리사법 ..... 135
$\square$ 비송사건절차법 ..... 136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훙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139
$\square$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4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142
（ 상표 법 ..... 144
■ 선박투자회사법 ..... 145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14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50
■ 소음•진동관리법 ..... 151
■ 수난구호법 시행렁 ..... 153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154
■ 수의사법 ..... 15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157
$\square$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158
■ 식물방역법 ..... 160
■ 약사법 ..... 161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16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166
■ 염업조합법 ..... 168
■ 영유아보육법 ..... 170
■ 우주개발 진흥법 ..... 172
- 원자력안전법 ..... 17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77
$\square$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179
■ 재외동포재단법 ..... 182
$\square$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183
■ 전기통신사업법 ..... 184
■ 전문심리위원규칙 ..... 186
■ 전자서명법 ..... 188
■ 전자정부법 ..... 190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191
■ 정보통신공사업법 ..... 194
$\square$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196
- 조정위원규칙 ..... 198
■ 주택법 시행령 ..... 20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05
■ 지방공무원법 ..... 210
$\square$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12
$\square$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213
■ 청소년 기본법 ..... 215
■ 청소년활동 진흥법 ..... 217
$\square$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218
■ 축산법 ..... 219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222
■ 통신비밀보호법 ..... 228
■ 특허법 ..... 230
$\square$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231
■ 한국국제협력단법 ..... 233
■ 한국마사회법 ..... 234
■ 항로표지법 ..... 238
■ 해사안전법 ..... 240
$\square$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41
■ 해양환경관리법 ..... 243
$\square$ 해외이주법 ..... 246
■ 해운법 ..... 247
■ 해운법 시행규칙 ..... 249
■ 협동조합 기본법 ..... 250
■ 화학물질관리법 ..... 252

2.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 255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257
■ 국민건강증진법 ..... 259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6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26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268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71
■ 도시가스사업법 ..... 272
■ 상공회의소법 ..... 27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7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7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79
■ 어선법 ..... 280
■ 어장관리법 ..... 281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28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85
$\square$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286
■ 원양산업발전법 ..... 288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89
$\square$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291
■ 전기공사업법 ..... 293
■ 전력기술관리법 ..... 295
■ 전시산업발전법 ..... 297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298
■ 전파법 ..... 300
■ 주차장법 ..... 30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305
■ 집단에너지사업법 ..... 30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09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311
■ 해양환경관리법 ..... 313
■ 화장품법 ..... 317
$\square$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320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난 2011년 3월 종래의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의 금치산제도와 한 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한편，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법률 제10429호，2011．3．7．공포，2013．7． 1. 시행）이 개정되었다．

획일적 기준에 따른 선고와 더불어 전면적，포괄적인 행위능력 제한 을 내용으로 하던 종래의 행위무능력제도와는 달리，새로운 성년후견 제도는 보편성，필요성，잔존능력의 활용，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현대 적인 후견제도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종래 개별 법령에서 행위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격조항1）을 존치시키는 것은 동 제도 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종래의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한편，新法 제정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 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킬지 여부 또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동 연구는 행위무능력제도에서의＇격리와 배제＇와는 달리＇참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1 년이 지난 시점에 서 관계법령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개정현황을 분석한다．이를 통 하여 향후 관계 법령 정비의 기준에 대한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과 추 진방향성에 대한 법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개정 민법 시행 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고도보존육성법 등 290 여개의 인허가 및 자격 관련사유에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 정해 왔다．

##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관하여 개관한다.
제2장 제 1 절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 행위무능력제도에 대하여 개관하고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의 결격조항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취지 및 주요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결격사유 의 의의, 결격조항의 취지를 간략히 살펴본 후, 국내 법령에서 결격조 항을 규정하는 유형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예시로 하여 살펴본다.

제 3 장 제 1 절에서는 결격사유 조항의 정비 기준에 관한 그간의 국내 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제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 에 대한 결격조항 개정이유, 결격조항 개정의 방식, 영역별 결격조항 개정의 현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향후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다.

## 제 2 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사유

## 제 1 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및 취지

1. 민법 개정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1) 민법 개정 전 행위무능력제도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종래의 행위무능력제 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는 의사무능력에 대한 입증을 면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보호라고 하는 제 1 차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 }^{2}$

## [표] 행위무능력제도

| 행위무능력자 | 능력의 범위 | 보호자 | 보호자의 기능 |
| :---: | :---: | :---: | :---: |
| 한정치산자 | 특정행위만 <br> 단독으로 가능 | 법정대리인 <br> (후견인) | 동의권, 대리권 |
| 금치산자 | 단독으로 행위를 <br> 할 수 없음 | 법정대리인 <br> (후견인) | 대리권 |

그러나 행위무능력제도 아래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행위능력의 전면적, 포괄적 박탈, 후견인의 숫자 및 자격의 엄격한 법 정, 감독기관의 실효성 부재,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보호의 부재 등을 이유로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였다.
2) 곽윤직, 민법총칙, 1989, 157("무능력자제도는 거래의 안전 내지 사회일반의 이익보 다는 본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제도는 개인본위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한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 [표] 행위무능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이 유 | 문제점 | 내 용 |
| :---: | :---: | :--- |
| 행위능력의 <br> 전면적 박탈 | 피선고자에 대한 <br> 자기결정권의 침해 |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상생활을 자 <br> 유롭게 향유할 수 없으며, 후견인에 <br> 의해 자신의 삶을 지배당하게 됨 |
| 행위능력의 <br> 포괄적 박탈 | 금치산자 및 <br> 한정치산자에 대한 <br> 잔존능력의 부인 | 인간 정신의 가변적 성격을 고려하 <br>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응력을 부체적인 사정변경에 따른 <br>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 |
| 후견인의 숫자 <br> 및 자격 한정 | 행위무능력자의 <br> 실질적 보호의 <br> 어려움 | 근친자, 최연장자, 배우자 등의 순으 <br> 로 엄격히 법정하여, 행위무능력자를 <br> 위해 적절한 보호 제공이 불가 |
| 감독기관의 <br> 유명무실화 | 실질적 감독 기능 <br> 수행이 불가 | 후견인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친족 <br> 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br> 감독기능에는 한계가 존재 |
| 신상보호에 | 수범자의 수요에 <br> 대한 부응의 <br> 어려움 | 주로 재산관리에 대한 법조문으로 <br> 구성 |

출처: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2013, 18-19면의 내용을 바탕 으로 재구성
(2)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의 결격조항

앞서 살펴본 문제와 더불어,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는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경우, 각종 임용 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받 는데 제한 내지 금지의 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 하였고, 궁극적으로 각종 사회적 활동에서 배제(exclusion)되는 문제점 이 있었다.

즉,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는 아래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 여개가 넘는 각종 법률의 이 른바 '결격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이들 법률의 규정은 대체로, (1) 공무 담임의 제한이나 금지, (2) 공인된 자격의 취득 제한 또는 금지, (3) 법인이나 단체 등의 대표나 임원 또는 사원의 자격 제한, (4) 위원 회 등의 위원의 자격 제한 또는 금지, (5) 특정영업이나 업종의 허가, 면허 등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임용 자격 및 공무담임의 금지

| 분 류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
| 임용 자격 및 공무담임의 금지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 다. <개정 2010.3.22> <br>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 국가정보원 직원 법 | 제 8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1)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br>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공인 자격의 취득 금지

| 분 류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
|  | 변리사법 | 제 4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공인 자격의 취득 금지 | 국민건강증진 법 | 제 12 조의 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 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br> (2)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 교육사가 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3) 임원 또는 사원의 자격

| 분 류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
| 임원 또는 사원의 자격 | 선박투자회사법 | 제 7 조(발기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br> 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 기인이 될 수 없다 <br>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1)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4) 위원회 등 위원의 자격 제한

| 분 류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
| 위원회 등 위원의 자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 $\mathbf{5}$ 조의 $\mathbf{3}$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 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  | 산업재해보상 <br> 보험법 | 제 107 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b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5) 특정 영업 또는 업종의 허가, 등록 등

| 분 류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
| 특정 영업 <br> 또는 업종의 <br> 허가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 6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 나 제 5 조,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 조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도시가스사업법 | 제 4 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분 류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
|  | 측량•수로조사 <br> 및 지적에 관한 <br> 법률 |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br>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br>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6) 기타 각종 사업 참여, 응시자격 등

| 분 류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
| 기타 각종 | 국비유학에 |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br>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br> 섭 참여, |
| 지원 등 | 관한 규정 |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기본이념
(1)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취지와 주요내용

1) 제도 도입의 취지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행위무능력제도는 선고의 대상이 되는 금 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한 편, 개별 법률에서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등 사회적 관점에서의 부 정적 낙인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한계를 노정하였다.3) 성년후견제도는

[^0]종래의 행위무능력제도의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복지국가의 진전으로 인한 후견제도 필요성 확대 등 을 배경으로 새로운 후견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배경 하에 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2) 주요내용

성년후견제도는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한 사람을 위한 법적 지원장치"5)를 말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서 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같이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하는 법정후견과 본인의 의사에 기해 체결되는 후견계약 제도인 임의후견 을 도입하였다.
(1) 성년후견제도

종래 금치산 선고의 사유는 인간의 정신상태를 기준으로 '심신상실' 의 ‘常態’를 금치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에 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를 가 능토록 하였다(민법 제9조). 이 때 ‘지속적 결여’란 "장차 상당한 기간
4) 민법 개정이유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획 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 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 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민법 개정안 [시행 2013.7.1.] [법률 제 10429 호, 2011.3.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구상엽,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민사법 학, 2013. 12, 671-673면;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 토, 가족법연구 제 24 권 제 1 호, $2010,34-36$ 면 참조.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김현수,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상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35-40$ 면 참조.
5) 구상엽,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민사법학, 2013. 12, 672면.

내에 그의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6)고 할 수 있다.

법적 효과에서도 금치산자의 경우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이 되 는 반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 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민법 제 10 조 제 4 항)"와 가정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민법 제 10 조 제2항)"를 정한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성년후견제도의 보편성 이념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잔존 또는 현존능력을 존중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도 고려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등

제 9 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 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10 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 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 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 2 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6)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2013, 26 면("가령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거나,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 또는 거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인지능력 이 떨어져 있는 경우 등이 그 예로 거론되고 있다.").
(4)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 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그러나 실제로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 람"에 대해서 개시되기 때문에, 민법 제 10 조 제 4 항과 제 2 항에서 피성 년후견인의 일상적인 법률행위와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2) 한정후견제도

종래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 한정치산 선고의 사유는 "심신이 박약 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7)였다. 그러나 한정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한정후 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 12 조 제 1 항). 이 때 능력의 ‘부 족'이란 전술한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되는 '결여'에 비해서는 정신 적 제약이 경미한 상태를 의미하며, "인지능력의 감퇴가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사람부터 상당한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8)고 할 수 있다.

종래 한정치산자의 경우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던 반면, 성년후견제도에서의 피한정후견인에 대 해서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
7) 민법 [법률 제4199호, 1990.1.13., 일부개정]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 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 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 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cdot 1 \cdot 13>"$.
8)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2013, 39면.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능력을 가지며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 다. 다만,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과 같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동의유보결정’을 통하여 필요최소한도로 피한정후견 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게 된다.9)
한편,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다(민법 제13조 제4항).

## [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등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 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 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 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 2 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 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 1 항에 따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 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9)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2013, 42-43면( "특정의 법률행위(가령 특 정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를 한정적으로 열 거하여 동의유보결정을 내리거나,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가령 1,000 만원 이상의 금 융거래 등) 포괄적으로 동의유보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 동의유보결정에 있어 서도 필요성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 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 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 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3) 특정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정신적 제약이 일정부분 있다하더라도 지속적 보호를 받지 않고,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일시적이거나 특정적인 사 무에 대해서만 보호나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앞서 설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이외에도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 한 후원"에 대한 특정후견제도를 신설했다(민법 제 14 조의 2 제 1 항).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심판의 경우 해당 특 정후견의 기간 또는 특정한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 14 조의 2 제 2 항).

## [표] 특정후견의 심판 등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 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다.
(2)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3)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 위를 정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표]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 구 분 | 법정후견 |  |  | 임의후견 |
| :---: | :---: | :---: | :---: | :---: |
|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  | 제한능력자 |  |  |  |
| 조 문 | 제9조 | 제 12 조 | 제 14 조의 2 |  |
| 개시사유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 의 지속적 결여 |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 의 부족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 약"으로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이 필요 | 정신적 <br> 제 약으로 <br> 사무처리 능력 <br> 부족 |
| 행위능력 | 원칙적인 행위능력자 | 원칙적인 행위능력자 | 원칙적인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  | 제 10 조 제 2 항, <br> 제4항에 <br> 해당하지 않는 <br> 범위에서 <br> 행위능력 제한 | 제 13 조 제 1 항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 제한 |  |  |
| 후견인의 <br> 권한 | 포괄적인 법정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br> 범위 내에서 <br> 대리권, <br>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출처: 김현수,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상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2014, 44-45면.
(2)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리는 자기결정 권의 존중, 본인의 잔존능력의 활용, 보편성, 보충성, 필요성, 의사능 력의 상대화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10) 이하에서는 이 중 결 격조항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개관한다.

1) 보편성

기본이념으로서 보편성은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낙인 효과를 가지지 않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배제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조화롭 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일컫는다. 즉, 보편성의 이념 하에서 성년후견제도는 동 제도의 이용자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11)
2) 필요성

종래의 행위무능력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된 데에는 제도에 따른 전 면적, 획일적 행위능력의 상실에 대한 것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년 후견제도에서는 본인이 필요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후견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이념이 작용하며, 이것이 필요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12)
3) 잔존능력의 활용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보편성, 필요성의 원리에 따라 후견제도의 활용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의 획일
10) 이에 관한 상세는 송호열, 성년후견제도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동아법학 제 33 호, 2003, 184-209면 참조.
11) 윤진수 • 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2013, 22 면.
12) 송호열, 성년후견제도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동아법학 제33호, 2003, 205 면.

적, 일률적 척도를 적용하던 행위무능력제도와는 달리,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
4) 보충성

현대 사회에서 사적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국가의 간섭이 인 정되는 경우라도 사적자치를 가능케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의사 확인이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의 간섭은 부차적이고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대리권한 을 가지는 후견인의 역할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14)

## 3. 소 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특징은 종래 행위능력에 관한 전면적, 포괄 적, 획일적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무능력제도와는 달리, 보편성, 필요성, 잔존능력의 활용,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종전의 행위무능력제도는 정신장애, 치매, 뇌병변, 약물,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낙인으로서 작용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한 제도였 다고 할 수 있다.15) 반면,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보편성의 원
13) 김현수,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상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43면;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가족법연 구 제 24 권 제 1 호, $2010,38-39$ 면; 송호열, 성년후견제도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동아 법학 제 33 호, 2003,201 면("피보호자에게 잔존능력이 있다면 그와 같은 잔존능력을 살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피후견인을 보호•조력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14) 송호열, 성년후견제도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동아법학 제33호, 2003, 206-207면.
15) 제철웅, 가칭 ‘피성년후견인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안, 성년후견 제 1 집, 2013, 140면.

리 하에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필요성과 보충성의 원리 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 는 동시에, 보편성, 필요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이용자에 대한 각종 자격제한과 관련한 기존의 법규정(결격조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 그리고 제정법상 결격 사유 규정에 관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16)

## 제 2 절 결격조항과 성년후견제도

## 1.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

(1) 결격사유의 의의

개별 법령은 해당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관련 주체의 행위 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요건' 규정을 두게 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 또는 '결격사유' 규 정을 두게 된다.17)
16) 송호열, 성년후견제도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동아법학 제33호, 2003, 198-199면 ("보편화의 원리는 본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에 대한 배려 및 각종 자격제한의 처 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 둘째, 본인보호와 자격제한의 철폐이다. 원칙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은 잃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 일반선거권의 제한 등과 같은 자격 내지 권리의 제한이 무능력자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자격제한은 의사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가 유효한 투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론적인 전제이지만, 외국에서는 이것은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폐지되는 상 황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법률에서의 자격제한(결격조항)은 금치산•한정치산의 이 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제한은 보편화의 이 념 등의 관점에서 자격제한을 가능한 한 두지 않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17) 김성호, 법령상의 결격사유에 관한 연구, 월간 법제, 1994. 5 , http://www.moleg.go.

따라서 결격사유란 '일정한 자격을 향유할 수 없도록 배제시키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용• 고용•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국가 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18)를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임용 자격 및 공무담임의 금지, 공인된 자격의 취득 제한 및 금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나 임원 또는 사원의 자격의 제한,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의 제 한 또는 금지, 특정 영업이나 업종의 허가, 면허 등의 제한 또는 금지 와 같이 결격사유를 두었다.
(2)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결격조항)의 취지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이나 의사 등 일정한 자격분야에서 해당하는 직 무가 영업의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안전, 건강, 또 는 재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익을 해할 우 려가 큰 경우, 해당 분야가 고도의 전문기술이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하기 위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해당 직무의 수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9)}$
$\mathrm{kr} /$ 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29295.
18) 류준모, 한정후견 - 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개정방안 연구, 월 간 법제, 2012. 9, 6면.
19) 김성호, 법령상의 결격사유에 관한 연구, 월간 법제, 1994. 5, http://www.moleg.go. $\mathrm{kr} /$ 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29295 참조.

결격사유는 이처럼 사전적으로 일정한 자질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이러한 사업이나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해당 사업이나 직종에서 일정한 자질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퇴출시키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20）
（3）결격사유의 유형
일반적으로 현행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21)}$

우선 법령에서 대체로 공통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행위무능력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법인 형태로만 수행가능한 사 업인 경우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 는 자를 결격사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예를 들어，「외 이주법」은＂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 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그러나 동 법 제3조에서는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1）행위무능력자
민법에서의 행위무능력자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이 거래나 재산상 의 신뢰 또는 신용을 요하는 경우에 두는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이 보통이다．

20）류준모，한정후견－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개정방안 연구，월 간 법제，2012．9，6면．
21）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현황에 관한 상세는 이준우，결격사유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9 참조．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공인중개사법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br>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br>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br> 1. 미성년자 |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의 경우도 행위무능력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영업 또 는 사업이 거래나 재산상의 신뢰 또는 신용을 요하는 경우를 상정하 여 결격사유의 대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수도법 | 제24조(정수시설운영 관리사) <br>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 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br>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3) 행정처분(인 • 허가의 취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인가나 허가의 취소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해당 영업을 제한하 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 7 조（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업을 할 수 없다． <br>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r> 2．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 을 초과한 법인 <br> 3．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4）형사처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 법령의 영업이나 사업에서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거나 일정 한 행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일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당 영업이나 사업，임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상공회의소법 | 제 23 조（의원 등의 자격제한）（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br> 1．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br> 2．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br>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br>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br> 5．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의료법 | 제 8 조（결격사유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07．10．17．＞ <br> 1．「정신보건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마약－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br> 3．금치산자－한정치산자 <br> 4．이 법 또는 「형법，제 233 조，제 234 조，제 269 조，제 270 조，제 317 조제 1 항 및 제 347 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 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text {「혈액관리법 }, ~} \mathbf{r}$ 마약 류관리에 관한 법률，${ }^{\text {r }}$ 약사법」 $, ~ r ㅁ ㅗ ㅈ ㅏ ㅂ ㅗ ㄱ ㅓ ㄴ ㅂ ㅓ ㅂ 」, ~ ㄱ ㅡ ~ ㅂ ㅏ ㄲ ㅇ 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5）임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개별 법령에서 법인 등이 인가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특 정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임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있는 때에 법인의 인•허가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을 하 는 규정이다．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여객자동차 <br> 운수사업법 | 제 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r>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1．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5．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6）기타의 결격사유
개별법상 관련 주체의 직무 또는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관련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이다．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국가정보원 직원법 | 제 8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1）직원은 사상（思想）이 건 전하고，품행이 단정하며，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 용한다． <br>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1．7．＞ <br>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br> 2．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br> 3．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5．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br>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


| 법 령 | 조문의 내용 |
| :---: | :---: |
|  | 중에 있는 사람 <br> 7．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
| 도로교통법 | 제 82 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br> 1． 18 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 세 미만）인 사람 <br> 2．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br> 3．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 면허만 해당한다），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br> 4．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 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다만，본인의 신체장애 정도 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 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5．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br> 6．제 1 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의 운전경험이 1 년 미만인 사람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2．성년후견제도 도입과 결격조항

（1）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조항 정비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의 행위무능력제도와는 달리 현대적 후견제도의 기본원리인 보편성，

필요성, 잔존능력의 활용, 보충성의 원리 등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로 상정되어, 종래 행위무 능력을 이유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해당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2)}$

## [표] 행위무능력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
| :---: | :---: | :---: | :---: | :---: |
| 효 과 | 데10조 제독으로 <br> 벙, <br> 제 4 항에 | 행위 불가 | 당하지 않는 <br> 범위에서 <br> 행위능력 제안 위만 | 단독으로 가능 | | 제13항의 범위 |
| :---: |
| 내에서 |
| 행위능력 제한 |

행위능력자로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는 파산자, 행정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대상자 등 기타의 사유로 결격사유 규정의 대상이 된 사안 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22)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비교사법 제 21 권 3호(통권 66호), 2014, 1230면("결국 개정민법의 성년후견제도가 아무리 본인의 자 기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들, 이러한 광범위한 결격조항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회적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후견제도를 이 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구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 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후견선고를 본인의 보호필요성을 넘어서는 어떤 능 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새로운 성년후견의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 다."); 제철웅, 가칭 '피성년후견인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 정 제안, 성년후견 제 1 집, 2013, 142 면; 류준모, 한정후견•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개정방안 연구, 월간 법제, 2012. 9, 1-3면; 현소혜, 성년후견제 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 특히 결격조항의 정비를 중심으로 -, 가족 법연구 제25권 3호, 2011, 144-145면 참조.
(2) 민법 개정과 경과규정

2011년 3월 7일 일부개정 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법 률 제 10429 호]의 부칙에서는 종래의 행위무능력제도의 폐지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행위무능력제 도 하에서 선고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만 각종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이들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 한 것이다.

## [표]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 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 1 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 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 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 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에 대하여 부칙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5 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우선 개정 민법의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개정 민법의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정 민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 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는 해당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 민법 시행 당시에 개별 법령에서 "금 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 는 사람에 대하여"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 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후 5 년이 경과하게 되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 시행 이후 성년후견, 한 정후견 개시를 받은 자나 기존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만 존재하게 된다.

## 3. 소 결

결격사유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일정한 자격 을 향유할 수 없도록 배제시키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종래 개별 법령에서는 대체로 공통적인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법인 형태로만 수행 가능한 사업인 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함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공통적인 결격사 유의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종래의 행위무능력제도와는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행위무능 력, 개념을 없애고, 보편성, 필요성, 잔존능력의 활용, 보충성의 원리 등 현대적 기본원리를 채택한 ‘제한능력’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

제 2 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사유

서 종래 행위무능력제도 하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능력의 제한 을 상정하는 각종 법렁의 결격사유 규정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입 법취지에 따라 정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비기준이 필요하다.

## 제 3 장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법령의 개정

## 제 1 절 성년후견제도와 법령 정비의 논의

1. 결격사유 조항의 정비 기준에 관한 논의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종래 행위무능력자였던 금치산 자와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대 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유형

| 유 형 | 내 용 | 결격조항 개정 방안 |  |
| :---: | :---: | :---: | :---: |
|  |  | 현 행 | 개 정 |
| 일괄 <br> 치환형 | $\diamond$ 기존의 행위무능력자(금치산 자, 한정치산자) 결격사유 유지 $\diamond$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 치환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begin{aligned} & \text { 일괄 } \\ & \text { 삭제형 } \end{aligned}$ | $\diamond$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결격 조항 전면 폐지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begin{aligned} & \times \\ & \times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일부 } \\ & \text { 치환형 } \end{aligned}$ |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중 금치 산자만을 피성년후견인으로 치환 <br> 한정치산자는 삭제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times$ |

(1) 일괄치환형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일괄치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

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 력제도 하에서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선고에 대한 요건 및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성년후견제도 하에서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인지능력의 감퇴가 매우 미약한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정치산자를 단순히 치환하여 피한정 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오히려 행위무능력자의 경 우에 비하여 적용의 대상을 확대하는 불합리에 이를 수 있으며, 헌법 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도 있다. ${ }^{2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서 이와 같은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 (2) 일괄삭제형

행위무능력제도와 다른 입법취지를 가진 성년후견제도 하에서의 피 후견인을 의사결정능력상 장애를 가진 자와 차별하여 결격사유의 대 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 금치산자와 한정치 산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은 민법상 경과조치 이후 이를 전면 삭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24)
23) 류준모, 한정후견•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개정방안 연구, 월 간 법제, 2012. 9, 7면.
24) 제철웅,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가족법연 구 제 27 권 제 1 호 2013, 14 - 15 면;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비교사법 제 21 권 3 호(통권 66호), 2014, 1251 면("피후견 사실을 사회활 동에 관련된 자격 등의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후견제도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전 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오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시점에서의 제도 개혁의 방안으로서는 성년후견 전유형에 있어서 결격조항의 전면폐지가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개혁은 장차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의 행위능력 제한제도의 전면 폐지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견해는 구체적으로 성년후견제도 하에서의 피후견인에 대한 결 격사유에 관한 논의25)에 대해서는 (1)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12 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위반, (2) 외형적 기준에 따른 권리, 자격, 권한을 박탈하는 문제, (3)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의 가변적 성격,26) (4) 피후견인에 대한 심대하고도 가혹한 결과 초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비판하며, 결격사유의 폐지를 주장한다. ${ }^{27)}$

반면, 결격사유에 관하여 종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관하여 이를 모두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도 존재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비록 피후견인이 직업선택의 자
25) 현소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 특히 결격조항의 정 비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 25 권 3호, 2011, 166-179면 참조.
26) 제철웅,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가족법연 구 제 27 권 제 1 호 2013, 15 면("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은 사안별 및 시간대별 또는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보며(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이처럼 가변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하향적으로 감퇴하거나(치매환자의 경우), 회복될 수도 있다(뇌사고 또는 정 신장애의 경우)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결격제도는 피후견인과 사회구 성원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합리적 기대를 저버리는 제도이다.").
27) 제철웅,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가족법연 구 제 27 권 제 1 호 2013, 15 면("가령 후견이 개시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피후 견인은 자발적으로 직업활동의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다. 그렿지 않더라도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휴직하거나 사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결정을 할 정도의 의사 능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자발적인 휴직 또는 사직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 가령 금치산자가 조합에서 당연 탈퇴하면 그로 인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매 우 클 것이다. 조합원의 물권적 지위가 탈퇴 시를 기준으로 채권적 지위로 전락하 기 때문이다(민법 제719조). 가령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복직도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수립에 그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기 위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철웅 교수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가칭) "피성년후견인등의 자 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의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피후견인의 직무수행을 가정법 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직무수행 등이 피성년후견 등이나 제 3 자의 재산 또는 신체•생명에 위해를 미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명령이 없다면 직무수행 등을 계속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직무수행 등의 위험성에 대해 피성년후견인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는 제철웅, 가칭 '피성년후견인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안, 성년후견 제 1 집, 2013, 146 면 이하 참조.

유를 향유하는 주체이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의 절대적 기본권성이 부 인되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요건(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 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 }^{28)}$
(3) 일부치환형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중 금치산자만을 피성년후견인으로 치환하고 한정치산자는 삭제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성년후견 관계법령 정비위원회의 입법제안의 내용이기도 하였다. 동 위원회는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에 따라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의 정비에 관하여 검토하 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제안을 제시하였다.
"1. 각 결격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이를 모두 삭제한다. 2. 각 결격조항에서 금치산자를 열거하 였던 곳에는 개정민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을 규정한다. 3. 개정 민법상 피한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조항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4. 각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과 결격조항의 규정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개의 보완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다."29)
(4) 유형별 정비형

이 견해는 개별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일정한 유형으로 나누어 개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8) 현소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 특히 결격조항의 정 비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 25 권 3호, 2011, 163 면("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당해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할 경우 발생하 는 손해는 결국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일본이 성년후견 제도를 도 입하면서도 결격조항 중 상당 부분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한 것 역시 이러한 공익적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29)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비교사법 제 21 권 3호(통권 66호), 2014, 1249-1250면.

절대적 결격사유와 상대적 결격사유로 구분한다. 절대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결격사유 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30)}$

## [표] 결격조항의 유형화에 따른 정비 방안

| 유 형 |  | 내 용 | 예시 조항 |
| :---: | :---: | :---: | :---: |
| 절대적 결격사유 |  | 전문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고 위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격 <br> 예) (1) 전문직, (2) 타인을 위해 업무 를 대행하는 경우, (3) 의료직역 | 공인노무사법 제4조 변호사법 제5조 |
| 상대적 <br> 결격 <br> 사유 | 실질 <br> 심사형 | 면허•특허 또는 인•허가 발급과정 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충분한 판단 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 로 심사 | 관세법 제 175 조 전자서명법 제5조 |
|  | $\begin{aligned} & \text { 사후 } \\ & \text { 규제형 } \end{aligned}$ | 공무원, 경찰과 같이 국가기관의 임 용절차를 거치는 경우 임용단계에서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적, 사후적 관점 에서 실질적으로 심사 | 지방공무원법 <br> 제31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 8 조 |
|  | $\begin{aligned} & \text { 동의 } \\ & \text { 유보형 } \end{aligned}$ | 등록, 신고 등과 같이 간이한 절차만 <br> 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한정후견인 등 <br> 의 동의를 받아 직무의 수행을 허용 | 건설기술관리법 <br> 제 29 조 <br> 기술사법 제7조 |

출처: 현소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 특히 결격 조항의 정비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25권 3호, 2011, 166-180면을 표로 재구성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한 견해는 유형화의 객관적 기준 의 제시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31)}$
30) 현소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 특히 결격조항의 정 비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25권 3호, 2011, 166-180면.

## 2. 논의의 정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함께 종래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 결격사유 를 규정하던 조항에 대한 정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각 의 견해에는 타당성이 존재하는 한편, 사회적 관행 등의 이유로 일원 적인 정비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민법 개정을 담당하였던 법무부에서 는 각 정부부처에 대하여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개별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제 2 절 개정 법령의 현황 분석

## 1. 서 설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이 개정된 이후, 종래 행위 무능력자를 결격조항의 대상으로 규정하던 법령들의 개정, 결격조항 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해서 개별 부처에 서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치환하는 한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입법목적, 해당 결격사유의 의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 -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취지의 확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 여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개정 법령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다.

[^1]개정 법령 중 예시적 조항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개정 법령 중 첫 째,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결격조항 개정의 이유를 검토한다. 둘 째, 성년후견 결격조항 개정의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행위무 능력제도 하에서 결격조항의 분류에 따라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조문 의 내용을 비교하여, 동일한 영역에서 법령에 따라 결격조항의 개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결격조항 개정이유 분석
(1)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일괄적으로 치환한 경우
$\square$ 법령명: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 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 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개정 전 - 후 조문내용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 |
| 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
|  | 2014.3.18> |
|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 |
| 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 | 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되지 아니한 사람 |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
|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
|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
|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
|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
| 는 사람 | 는 사람 |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 |
| 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명: 식물방역법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결격사 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하려는 것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개정 전 - 후 조문내용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0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 |
| 조제 1 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 | 조제 1 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 |
| 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이 취 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br> 5. 임원 중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있는 법인 <br> [본조신설 2011.7.14] | 2014.3.18>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이 취 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br> 5. 임원 중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1.7.14]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성년후견제도 도입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경우

## 법령명: 어선법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되었 고,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 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일률 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바,

어선소유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 체하되, 피한정후견인을 동 규정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square$ 개정 전 - 후 조문내용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 14 조, |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 14 조, |
| 제16조제 1 항 및 제17조부터 제 19 | 제 16 조제 1 항 및 제 17 조부터 제19 |
| 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 | 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 |
| 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 |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
| 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
| 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 |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 |
| 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 | 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 |
| 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3.18> |
| 1.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의 신청 | 1. 어선의 총톤수 측정 • 개측의 신청 |
|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 |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 |
| 판의 부착 | 판의 부착 |
|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
|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
|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 |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 |
| 유자의 의무 | 유자의 의무 |
| [전문개정 2008.3.28] | [전문개정 2008.3.28.] |
| ….. |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 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square$ 법령명：어장관리법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되었 고，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 게 할 수 있으며，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일률 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바，어장정화•정비업 의 등록 제한 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피한정후 견인을 등록제한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square$ 개정 전－후 조문내용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8조（등록의 제한）다음 각 호의 | 제 $\mathbf{1 8}$ 조（등록의 제한）다음 각 호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
|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 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 | 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 |
| 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 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
| 2009．4．22，2013．8．13＞ | 2009．4．22，2013．8．13，2014．3．18＞ |
| 1．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 1．피성년후견인 |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br> 니한 자 <br> 3．이 반 자 이나 「수산업법」 및 「수 <br> 3．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 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 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 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 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부 칙 <br>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 <br> 치）제 18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제 19 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 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 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3．결격조항 개정의 방식

개별 부처의 결격조항 개정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첫째，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대

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일괄치환형', 둘째, 금 치산자와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치환 하는 ‘일부치환형', 셋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대신 피 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되,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결격사 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치환형
$\square$ 법령명: 국가정보원직원법

- 개정이유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 서 삭제하고, 이를 개선•보완하여 새로 도입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 견인을 각각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 신설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개정 전 - 후 조문내용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8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제 8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 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
| 수 없다. | 수 없다. <개정 2014.1.7> |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일부치환형

## $\square$ 법령명：상공회의소법

$\square$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자 격제한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개정 전－후 조문내용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1）다음 |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1）다음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 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
| 2．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개정 2014．1．21＞ |
|  | 2．피성년후견인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3）일괄치환 후 단서 추가형

■ 법령명：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square$ 개정이유

현행법은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 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되, 피한정후견인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 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square$ 개정 전 • 후 조문내용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6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br>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br>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br> <개정 2005.3.31>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제 6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br>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 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외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4. 영역별 결격조항 개정 현황 분석
(1) 임용 자격 및 공무담임의 금지

## 국가공무원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
|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2013.8.6>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지방공무원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
|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 |
|  | 8.6> |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공인 자격의 취득 제한 또는 금지

## 변리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4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 4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
| 되지 못한다. |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
|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 |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 |
| 치산자 | 성년후견인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민건강증진법

| 개정 전 |
| :---: |
| 제 12 조의 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 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 정 2005.3.31>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 제 $<2013.7 .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 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 사의 등급은 1 급 내지 3 급으로 하 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건교육사 1 급의 자격증을 교 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 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 12 조의 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 개정 후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 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 정 2005.3.31, 2014.3.18>

## 1. 피성년후견인

2. 삭 제 $<2013.7 .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 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 사의 등급은 1 급 내지 3 급으로 하 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건교육사 1 급의 자격증을 교 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 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010.1.18> [본조신설 2003.9.29] | 2010.1.18> [본조신설 2003.9.29]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3) 임원 또는 사원의 자격

- 선박투자회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7 조(발기인) (1)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 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br>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제 7 조(발기인) (1)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 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br>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3 7}$ 조(임원의 자격 요건) (1) 다음 <br>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37조(임원의 자격 요건) (1) 다음 <br>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 | 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 |
| 이 될 수 없다. | 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2) 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 되면 당연히 해임된다.
(3) 제 2 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 을 잃지 아니한다.
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
10.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1.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2) 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 되면 당연히 해임된다.
(3) 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 을 잃지 아니한다.

## 부 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37 조제 1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 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 <br> 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 <br> 함하는 것으로 본다．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개정 전 |
| :---: |
| 제 7 조（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 |
| 제 1 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
|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다． |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2．제 8 조 및 제9조에 따른 주식 |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 한 법인

3．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 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3．이 법，「방송법」，「전기통신기 본법」，「전기통신사업법」및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

## 개정 후

제 7 조（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 제 1 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 한 법인
3．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4．6．3＞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3．이 법，「방송법」，「전기통신기 본법」，「전기통신사업법」및「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 |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 |
| 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 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
|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 |
| 과되지 아니한 자 | 과되지 아니한 자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4）위원회 등 위원의 자격 제한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br> （1）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 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개정 2013．3．23＞ （2）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 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qquad$ <br>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br>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 제 60 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br> （1）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 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개정 2013．3．23＞ （2）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 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br>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14．3．18＞ <br> 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
|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
| 나지 아니한 사람 | 나지 아니한 사람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 <br> 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br> 희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br> 2014.3.18> |
|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 |
| 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 | 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
| 되지 아니한 사람 |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
|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
|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 거나 집행이 면제되 날부터 2년 |
|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
|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
| 는 사람 | 는 사람 |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 |
| 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5) 특정 영업 또는 업종의 허가, 등록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6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 른 허가를 받거나 제 5 조, 제 5 조의 3 및 제5조의 4 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 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9.5.21>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 른 허가를 받거나 제 5 조,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 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9.5.21, 2014.1.21> <br> 1. 피성년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br> 부칙 <br>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6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 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본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도시가스사업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4 조（결격 사유）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 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qquad$ | 제 4 조（결격 사유）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 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br>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br> 부 칙 <br> 제 3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 <br> 치）제 4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 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 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다음 <br>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다음 <br>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br> 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개정 2013．7．17＞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br>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
|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
| 한 자 | 한 자 |
| $\ldots \ldots .$. | $\ldots .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6) 기타 각종 사업 참여, 응시자격 등

■ 국비유학에 관한 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22 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 험에 응시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 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 는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 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제 22 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 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 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 는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 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
|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 |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 |
| 된 자［전문개정 2004．1．29］ | 된 자［전문개정 2004．1．29］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5．소 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결격조항에 대한 개정 법령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결격조항 개정의 이유에 관해서 다 수의 법령에서는 단순히 종래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의 금치산，한정 치산 제도가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제도로 변 경된 사항을 적시하고，단순히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 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어선법」，「어장관리법」의 경우 개 정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으로 원칙적인 행위능력자 로서 피한정후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를 적시하고，이를 결격 조항의 개정에 반영하고 있다．

둘째，결격조항의 개정 방식은 일괄치환형，일부치환형이 다수를 이 루었다．그리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례에서 보 듯이，일괄치환 후 하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한 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채택되고 있다．

셋째，결격사유의 영역별 개정 법령의 현황을 살펴보면，
（1）「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과 같이 임용 자격 및 공무 담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피한정후견인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공인 자격 취득의 제한 또는 금지 의 경우「변리사법」과 같이 이른바 ‘전문직’의 자격에 관해서는 피한 정후견인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그 외의 자 격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보건교육사의 자격의 취득 규정 의 개정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삭제 된 경우가 있다．（3）임원 또는 사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선박투자 회사」의 발기인의 경우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멀티미 디어 방송제공 사업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여전히 결격사유로 남아 있으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의 대상이 아니다．（4）위원 회 등에서 위원의 자격 제한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대체로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5）특정 영업 또는 업종의 인•허가 등의 경우에는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제 4 조의 허가，제 5 조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도 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피성년후 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의 대상으로 유지되 고 있다．（6）한편，「국비유학에 관한 규정」에서 국비유학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대상은 개정 후에도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존치하고 있다．이처럼 결격조항은 동일한 영역 또는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일응 판단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들 상호 간에서도 피한정후 견인의 존치 여부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 4 장 결 론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종래의 행위무능력제도는 행위능력에 관한 전면적, 포괄적, 획일적 제 한을 내용으로 각종 법령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결과 를 초래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보편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필요 성의 원리, 잔존능력의 활용, 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현대적 후견제도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과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보 장할 수 있도록 종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정비를 위한 기준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이와 같은 정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지 속되어 왔으나, 사회적 관행 등을 이유로 일원적인 정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이에 대한 법령의 개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동일한 영역 또는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일응 판단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들 상호 간에 서도 피한정후견인의 존치 여부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법의 개정을 통한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제개정 법령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 께 관련 정비기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곽윤직, 민법총칙, 1989.
구상엽,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민사 법학, 2013. 12.

김성호, 법령상의 결격사유에 관한 연구, 월간 법제, 1994. 5.
김현수,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상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2014.

류준모, 한정후견•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개정방안 연구, 월간 법제, 2012. 9.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가족법연구 제 24 권 제 1 호, 2010.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비교 사법 제21권 3호(통권 66호), 2014.

백승흠, 현행 성년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성년 후견제도, 민사법학 제24호, 2003. 9.

송호열, 성년후견제도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동아법학 제 33 호, 2003.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2013.
이준우, 결격사유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제철웅, 가칭 '피성년후견인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제안, 성년후견 제 1 집, 2013.

제철웅,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가족법연구 제 27 권 제 1 호 2013.

참 고 문 헌

현소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 특히 결
격조항의 정비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 25 권 3호, 2011.

부록 1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a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1 3}$ 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제 $\mathbf{1 3}$ 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 |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 |
| 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 | 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 |
| 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 | 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 |
| 다. <개정 2011.5.24, 2012.6.1> | 다. <개정 2011.5.24, 2012.6.1, 2014.5.14> |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법령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 제 $\mathbf{2 4}$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r>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롤 (별격사율) 다음 각 호의 없다. 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r>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  |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013.6 .12>$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법렁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6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 정 2009.6.9> <br>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 제 6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r>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 정 2009.6.9, 2013.3.22> <br>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제 2 호 및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 228 조 및 제 287 조부터 제 294 조까지의 규정， 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출입국관리법」제 7 조의 2 및 제 18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제 18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6．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4．제 2 호 및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text {「형법」제 } 228 \text { 조 및 }}$ 제 287 조부터 제 294 조까지의 규정， 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2 ，${ }^{\text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출입국관리법」제7 조의 2 및 제 18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 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br> 5．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 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6．제 18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7．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11672호，2013．3．22，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 없음
$\square$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이 법이나 「국가보안법」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 104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3．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개정 2013．7．17＞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3．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 104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83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 제 52 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 | 4. 제 52 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 |
| 지 아니한 자 | 지 아니한 자 |
| 5. 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5. 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자가 있는 법인 | 는 자가 있는 법인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1943호, 2013.7.17,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 없음
법령명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5}$ 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 $\mathbf{5}$ 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30>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

84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의 사외이 | 4.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의 사외이 |
| 사 등의 지위로 보관은행과의 관계상 공정한 직무수행 | 사 등의 지위로 보관은행과의 관계상 공정한 직무수행 |
|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square$ 개정시기 : [대법원규칙 제2538호, 2014.5.30,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
제한능력자에 대한 민법(법률 제11728호, 2013.4.5. 공포, 2013.7.1. 시행)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
고자 함
■ 법령명 : 국가공무원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85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
| 한 자 | 한 자 |



$$
\begin{aligned}
& \text { ■ 개정시기 : [법률 제11992호, 2013.8.6, 일부개정] } \\
& \square \text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text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히 } \\
& \text {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임용 } \\
& \text {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 \\
& \text {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end{aligned}
$$

■ 법령명 ：국가정보원직원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8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1）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 하고，품행이 단정하며，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 한다． <br>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br>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br> 2．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br> 3．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제 8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1）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 하고，품행이 단정하며，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 한다． <br>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1．7＞ <br>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br> 2．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br> 3．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87
■ 개정이유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5．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br>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7．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전문개정 2011．11．22］ |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5．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br>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7．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전문개정 2011．11．22］ |

■ 개정시기 : [법률 제12223호, 2014.1.7,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국가정보원의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하
고，조직 및 인력 운용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징계사유의 시효 등을「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內주요내용
나．직원의 임용결격 사유 정비（제8조 제2항 제3호）．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서 삭제하고，이를 개선•보완하여
새로 도입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 신설함．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22 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br>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 는 상실된 자 [전문개정 2004.1.29] | 제 $\mathbf{2 2}$ 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br>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 는 상실된 자 [전문개정 2004.1.29] |
| ■ 개정시기 : [대통령령 제25296호, 2014.4.8,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외
국의 교육기관으로 정의하는 등 국외유학 및 연수를 행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그 기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법령명 ：기술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7 조（등록거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제 21 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 7 조（등록거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2014．5．28＞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제 21 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0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4.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 4. 제 21 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
|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5. 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 | 5. 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 |
| 6.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 6.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
|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7.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 [전 | 7.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 [전 |
| 문개정 2011.6.7] | 문개정 2011.6.7] |

개정시기 : [법률 제12676호, 2014.5.28,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기술사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에, 자격활용에 관하여는 13 개 주무부처에, 기술사의 육성시책 수립 등 업
무에 대한 감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인정기술사(학. 경력기술자)제도로 인하여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술사의 등록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을 부과함에 있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
액을 조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diamond$ 주요내용
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
견인으로 변경함(제7조제1호).
■ 법령명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
| :--- | :--- |
| 제 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  |
| 규정에 후 |  |
| 의한 6남극활동의 혈격사유) 다를 븜 갇홀으 수 에 없다.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의 |  |
| 2005.3.31> |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 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
|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
| :---: | :---: |
| 5．제 12 조제 1 항의 흉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허가가 취소된 |  |
|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
| 6．대표자가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1 에 해당하는 중입 인 또쓴는 자 |  |
| 단체 | 5．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허가가 취소된 <br>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6．대표자가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br> 단체 |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12768호，2014．10．15，일부개정］
그러나 r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성년후견•한정후견 제
 도가 시행됨．
이에「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되，피한정후견인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
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3 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1) 제 11 조 및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br> 1.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출자금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 어 출자할 수 있다. <br> 2. 존속기간이 3 년 이상일 것 <br>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br> 가.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1) 제11조에 따라 농식 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 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13.3.23, 2013.8.13> <br> 1.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출자금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 어 출자할 수 있다. <br> 2. 존속기간이 3 년 이상일 것 <br>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일 것 <br>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br>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라．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바．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농식품투자조합의 취 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 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 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 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그 밖에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br> （2）그 밖에 등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라．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바．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농식품투자조합의 취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 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그 밖에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그 밖에 등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square$ 개정시기:
■ 개정이유: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
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중 결격
사유 확인대상을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과 펀드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으로 한정하는 한편, 「민법」 개정으
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간에 상충되
거나 개정된 다른 법률을 인용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 법령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
| :---: | :---: |
| 개정 후 |  |
|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 |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 |
| 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 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
| 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 년 이 | 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 |
| 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 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

96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 개정 후 |
| :---: | :---: |
| 2012．2．22，2013．3．23＞ <br> （2）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 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제 23 조의 2 에 따라 도매시장법 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 상 양수（이하＂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제 1 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br> 1．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 명 이상 있을 것 <br> 2．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br> 3．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 2012．2．22，2013．3．23＞ <br> （2）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 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제 23 조의 2 에 따라 도매시장법 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 상 양수（이하＂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제 1 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14．3．24＞ <br> 1．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 명 이상 있을 것 <br> 2．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br> 3．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 임원 중 제 82 조제 2 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br>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br> (4)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 3 항제 1 호의 요건을 갖추 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 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br> (5)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 3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 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br> (6)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전문개정 2011.7.21] | 4. 임원 중 제82조제 2 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br>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br> (4)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 3 항제 1 호의 요건을 갖추 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 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br> (5)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 3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 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br> (6)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전문개정 2011.7.21] |
| 제27조(경매사의 임면) (1)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 매사를 두어야 한다. <br> <개정 2013.3.23> | 제27조(경매사의 임면) (1)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 매사를 두어야 한다. <br> <개정 2013.3.23> |



| 개정 | 개정 |
| :---: | :---: |
| （2）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 하여야 한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 또 는 그 임직원 <br> 5．제 82 조제 4 항에 따라 면직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6．제 82 조제 4 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3）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 여야 한다． <br> （4）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 | （2）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 하여야 한다．＜개정 2014．3．24＞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 또 는 그 임직원 <br> 5．제 82 조제 4 항에 따라 면직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6．제 82 조제 4 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3）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 여야 한다． <br> （4）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 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br> [전문개정 2011.7.21] |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 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br> [전문개정 2011.7.21] |
| 제 36 조(시장도매인의 지정) (1)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 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br>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br>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 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br>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 제 36 조(시장도매인의 지정) (1)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 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3.24> <br>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br>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 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br>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



| 개정 전 |  |
| :---: | :---: |
|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후 |  |
| 바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닌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 |
| 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  |
|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
| (3)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 1 호부터 제4호까지 | (3)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 1 호부터 제4호까지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 |
| 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 (4)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 | (4)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 |
|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4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3 조제 1 항 전단 및 제 2 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6. 임원 중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5.8] | 제 $\mathbf{4}$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3 조제 1 항 전단 및 제 2 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2014.3.18>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6. 임원 중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5.8] |

[^2]102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
\begin{aligned}
& \text { - 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frac{\text { 交 }}{1} \\
& \text { 㟨 } \\
& \text { 畑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end{aligned}
$$

## ■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 개정 전 |  |
| :---: | :---: |
|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후 |  |
| 덩느 하는 사나람엔 환지사가 댈 두 없다． |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4．3．18＞ |
| 2．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광우른 포함 |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징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
| 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 3．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 | 3．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
|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개정시기 ：［법률 제12428호，2014．3．18．，일부개정］
■ 법령명 : 담배사업법

| 전 | 게 |
| :---: | :---: |
|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 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br>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br> 5. 제 11 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 11 조의 2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br>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 제 11 조의 4 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 | 6. 대표자가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br> 는 법인 <br> [본조신설 2001.4.7] |
| [전문개정 2014.1.21] |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6 조（소매인의 지정）（1）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 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1999．12．31，2001．4．7， 2004．1．20＞ <br> （2）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 을 수 없다．＜개정 1999．12．31＞ <br>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br> 5．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6．대표자가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 <br> （3）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 2 조 | 제 16 조（소매인의 지정）（1）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 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br> （2）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 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br> 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br>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라．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 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12.13, 1999.12.31, 2001.4.7, 2004.1.20, 2011.9.15> <br> (4)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br> <개정 1993.12.31, 1997.12.13., 1999. 12.31, 2008.2.29> [제목개정 2001.4.7] | 마.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br> 2. 청소년 $(\ulcorner$ 청소년 보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 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 하려는 경우 <br>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br> (3)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br> [전문개정 2014.1.21] |

[^3]| － | 제 정 |
| :---: | :---: |
|  | 제27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br>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형법」 제 287 조부터 제 292 조까지 및 제 294 조， $\mathbf{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의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 에 관한 법률」및 $\mathbf{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제 33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제 12349 호，2014．1．28．，제정］ <br> 제정시기 ：［법률 제정이유 ：없 음 <br> 법령명 ：도선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br>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br>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3．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br> 5．「선박직원법」제9조제 1 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 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4．3．18＞ <br>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br>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3．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br> 5．「선박직원법」제9조제 1 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 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


| 개정 전 |  |
| :---: | :---: |
| 지나지 아니항 사람 |  |
|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  |
|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2.6] |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노제1힝에 따니한 사람 [전문개장 2009.2.6] |  |

■ 법령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개정 전 |  |
| :---: | ---: |
| 개정 후 |  |
| 제26조(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1) 제25 | 제26조(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1) 제25 |
| 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 | 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 |
|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br> （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br>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제 29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임원 중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br> ［본조신설 2008．3．28．］ <br> ［종전 제 26 조는 제 44 조로 이동 $¥$ ］ |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br> （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br>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13．5．22＞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제 29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법인의 대표자가 제 1 호에 해당하는 법인 5．임원 중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br> ［본조신설 2008．3．28．］ <br> ［종전 제26조는 제44조로 이동 $¥$ ］ |

개정시기 ：［법률 제11801호，2013．5．22，일부개정］

■ 법령명 : 도시철도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제28조(결격사유) (1)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를 받을 수 없다.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 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 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2) 이 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도시철도운 |
| 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

- 개정시기: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 개정이유 :없음

■ 법령명 : 동물보호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
| 제 33 조(영업의 등록)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제 33 조(영업의 등록)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
| 한다. <개정 2013.3.23> | 한다. <개정 $2013.3 .23>$ |
|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 휴업 또는 그 영업을 |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 휴업 또는 그 영업을 |
|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br>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다만，제 5 호는 제 32 조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br> 1．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 치산자인 경우 <br> 2．제 3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br> 3．제 38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br> 4．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경우 <br>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7 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 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br>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다만，제 5 호는 제 32 조제 1 항 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개정 2014．3．24＞ <br> 1．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br> 2．제 3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br> 3．제 38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br> 4．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경우 <br>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17 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 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34조(영업의 신고) (1) 제32조제 1 항제 4 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br>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br> 1. 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 치산자인 경우 <br> 2. 제 3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br> 3.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제34조(영업의 신고) (1) 제32조제 1 항제 4 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 1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br>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br> 1. 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br> 2. 제 3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br> 3.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
\begin{aligned}
& \text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text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 • 한정치산 징 } \\
& \text { 여,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등록 및 } \\
& \text { 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end{aligned}
$$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제 4 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1）미성년자•피한정후견 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그 밖의 절차（이하＂디자 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다만，미성년 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제 1 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 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 개정시기 : [법률 제11848호, 2013.5.28., 전부개정]
$\square$ 개정시기 : [법률
$\square$ 개정이유 : 부칙
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 법령명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제 9 조(서류의 송달 등) (1)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br>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 1 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br>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2．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 는 경우：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br> 3．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등기우편물 수령증 <br> （3）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심판，재심，통상실시 권 설정의 재정（裁定）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 15 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다만，법 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 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할 수 있다． <br> （4）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 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5）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또 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송달한다. <br> (6)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 인에게 송달한다. <br> (7)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 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br> (8)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 달받기 위한 대표자 1 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 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br> (9)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 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 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br> (10)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r> (11)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 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br> (12)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 법에 따른다. <br> [시행일:2014.1.7.] 제9조제5항 |

## ■ 법령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1)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 제 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1)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
|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 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
|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 $\cdot$ 광역시장 $\cdot$ 도지사 또는 특별자 |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 $\cdot$ 광역시장 $\cdot$ 도지사 또는 특별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 며，제 5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br> 1．마약류수출입업자：「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 고를 한 자 <br> 2．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약사법」에 따 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br> 3．마약류도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br> 4．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br> 5．대마재배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조제 2 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 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 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 며，제 5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br> 1．마약류수출입업자：「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 고를 한 자 <br> 2．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약사법」에 따 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br> 3．마약류도매업자：r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br> 4．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br> 5．대마재배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조제 2 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 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br>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 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 를 받을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br>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br>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br> [전문개정 2011.6.7] | (2)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br>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 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 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18> <br>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br>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br>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br> [전문개정 2011.6.7] |


■ 개정시기 : [법률 제12495호, 2014.3.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PMMA 등 신종 흥분물질은 기존의 마약류와 같이 인체의 중
추신경계에 작용하므로 오남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 최근 이러한 신종 흥분물질을 입
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예고 단계부터 차단, 통제하여 그 관리
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
편, r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
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제한사유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시기 : [법률 제12495호, 2014.3.18, 일부개정]

> 주요내용

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대마재배자의 허가 제한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6조제 3 항제 1 호).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3 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 가 될 수 없다．＜개정 2011．8．4，2013．3．23＞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br> 3．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br> 4．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자격 취소일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장제사 또는 재활 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 | 제 13 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 가 될 수 없다．＜개정 2011．8．4，2013．3．23，2014．3．18＞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br> 3．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br> 4．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자격 취소일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장제사 또는 재활 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 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 | 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게 된 경우 | 당하게 된 경우 |
| 3．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3．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 4．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3）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 （3）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
|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 정한다．＜개정 2013．3．23＞ | 정한다．＜개정 2013．3．23＞ |

[^5]|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 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br> 1. 미성년자 <br>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br> 3. 파산선고를 받은 자 <br>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br>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br> 6. 행방이 불명한 자 <br>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 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br> 1. 미성년자 <br>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br>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br>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 에 있는 사람 <br>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br>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br>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br>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 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br> [전문개정 2011.3.7]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1 0 7 2}$ 조（증인의 결격사유）（1）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 | 제 $\mathbf{1 0 7 2}$ 조（증인의 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 1．미성년자 | 1．미성년자 |
| 2．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2．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 3．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3．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 （2）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 （2）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r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
| 증인이 되지 못한다． | 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3．7］ |

$$
\square \text { 개정시기 :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
$$

■ 개정이유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복리에 관한 폭넓
ㅣㅣㄱㅘ 지

$$
\frac{\sqrt[1]{10}}{10}
$$

$\frac{\text { 采 }}{\text { 衣 }}$


| 게정 전 | 후 |
| :---: | :---: |
|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제43조제 1 항에 따 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 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 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br> 1. 권리자 <br> 2. 실시권자 <br> 3. 사용권자 <br> 4. 직무발명자 <br> 5.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자 <br> (2)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 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br> [본조신설 2010.6.8] | 제43조의 2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제 43 조제 1 항에 따 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 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 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br> 1. 권리자 <br> 2. 실시권자 <br> 3. 사용권자 <br> 4. 직무발명자 <br> 5.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자 <br> (2)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br> [본조신설 2010.6.8]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1960호, 2013.7.30,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 없음
$\square$ 법령명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square$ 법령명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2 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1) 법인이 아니거나 제 11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br>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 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 12 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1) 법인이 아니거나 제 11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15> <br>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br>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 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5．「형법」제 87 조부터 제 90 조까지，제 92 조 및 제 101 조，「군 형법」 제 5 조부터 제 8 조까지，제 9 조제 2 항 및 제 11 조부터 제 16 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 3 조부터 제 9 조까지의 죄를 범하여，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 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6．「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br> （3）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4．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5．「형법」 제 87 조부터 제 90 조까지，제 92 조 및 제 101 조，「군 형법」 제 5 조부터 제 8 조까지，제 9 조제 2 항 및 제 11 조부터 제 16 조까지 또는「국가보안법」 제 3 조부터 제 9 조까지의 죄를 범하여，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 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6．「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br> （3）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begin{aligned}
& \square \text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begin{array}{l}
\text { 「민법」이 개정(법률 } \\
\text {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
\end{array}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시행)되었음 } \\
& \text { 년후견인 또는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入昗 }
\end{aligned}
$$

> 㐰
> $\begin{aligned} & 0 \dot{0} \\ & \text { Tर }\end{aligned}$
■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1）다음 각 호의 |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1）다음 각 호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 |
| 전문회사（이하＂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 | 전문회사（이하＂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 |
| 정 2009．1．30，2011．7．25＞ | 정 2009．1．30，2011．7．25＞ |
| 1．대학（단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1．대학（단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
| 2．국공립연구기관 | 2．국공립연구기관 |
| 3．정부출연연구기관 | 3．정부출연연구기관 |


| 게장 전 | 개정 후 |
| :---: | :---: |
| 4．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br> （2）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 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3）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 정 2009．1．30＞ <br>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br> 2．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br> 가．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라．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 | 4．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br> （2）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 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 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개정 2009．1．30，2013．3．22＞ <br>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br> 2．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r> 가．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마．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br> 바．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 거나 정지된 사람 <br> 3．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상일 것 <br> （4）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개정 2010．1．27＞ <br> 1．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br> 2．제 1 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제 1 항제 1 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br>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 터의 설립－운영 <br> 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br> 5．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br> 6．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 | 마．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br> 바．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 거나 정지된 사람 <br> 3．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br> （4）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개정 2010．1．27＞ <br> 1．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br> 2．제 1 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제 1 항제 1 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br>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 터의 설립－운영 <br> 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br> 5．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br> 6．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전 알선 | 전 알선 |
| 7. 대학•연구기관의 교원 • 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 7. 대학•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
| 대한 경영•기술 지원 | 대한 경영•기술 지원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 |
| 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8.3] | 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8.3] |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4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br> 1．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3．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5．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r> 가．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나．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다．「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전문개정 2011．5．24］ | 제 4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개정 2013．7．30＞ <br> 1．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3．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br>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5．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r> 가．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나．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다．「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전문개정 2011．5．24］ |

개정시기 : [법률 제11962호, 2013.7.30, 일부개정]
개정이유 : 없음
■ 법령명 : 비송사건절차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 제 $\mathbf{1 2 1}$ 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
| 1. 미성년자 | 1. 미성년자 |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
|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 [전문개정 2013.5.28]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1827호, 2013.5.28, 일부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1 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1）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 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2013．3．23＞ <br> （2）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13．3．23＞ <br> （3）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 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br>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 11 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1）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 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2013．3．23＞ <br> （2）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13．3．23＞ <br> （3）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 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0．15＞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 은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 은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 개정시기 : [법률 제12759호, 2014.10.15,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법 제44 조의4제 1 항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및 사회기반시설사업 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18> <br> (2) 법 제 44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 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업시 행자가 추천하는 법 제44조의 4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18> <br> (3) 법 제 44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 4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위촉한다. <개정 2013.3.18> <br> (4) 법 제 44 조의 4 제 2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34조의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 44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18> <br>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본조신설 2011.11.4] [제3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 9 는 제 34 조의 10 으로 이동 $¥]$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 충족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18> |  |
| 1.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 |  |
| 났을 것 |  |
|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 • 건설 • 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  |
|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 |  |
| (5)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 (6)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 (7)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이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  |
| 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 |  |
| 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
| 4. 제34조의 1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 |  |
| 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 |  |
| 친 경우 |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본조신설 2011.11.4] [제3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 |  |
| 8 은 제34조의9로 이동 ¥] |  |

$\square$ 개정시기 : [대통령렁 제25358호, 2014.5.22, 타법개정]
$\square$ 개정이유 :없음
■ 법렁명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제 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 $2014.3 .18>$ |
|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
|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
| 사람 |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 |

141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니한 사람 |
|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 |
| 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br> 지된 사람 |

■ 법령명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1)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 |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1)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 |
| 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 | 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 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제 20 조에 따라 조성 된 치유의 숲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 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개정 2013.3.23> <br>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치유지 도사가 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지된 자 <br> (4)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 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 조신설 2011.7.14] | 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 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br> (2)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 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 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br>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치유지 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3>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지된 자 <br> (4)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 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 조신설 2011.7.14] |

## ■ 법령명 : 상표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5}$ 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 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br> (2) 제 1 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 | 제 5 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피한정후견 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 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 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br> (2) 제 1 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 방이 청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

144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를 밟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 |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3.4.5> |
| [전문개정 2011.12.2] |  |

■ 개정시기 : [법률 제11747호, 2013.4.5,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없음
■ 법령명 : 선박투자회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7 조(발기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br>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 7 조(발기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br> 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br>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45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 운•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 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6. 이 법 또는 해운 •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 (그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 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에 대 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br> 7. 이 법 또는 해운 - 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 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2)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아 |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 운•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 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6. 이 법 또는 해운•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 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 (그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 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에 대 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br> 7. 이 법 또는 해운•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 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2)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아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
| :---: | :---: |
| 개정 후 |  |
|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br> 을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br> 을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6]■ 법령명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제 $\mathbf{4 0}$ 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br> 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br> 1. 미성난잠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4.3.18> |

147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7．「보험업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보험회사의 허가 취 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2 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br> 8．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7．「보험업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보험회사의 허가 취 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2 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br> 8．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2）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 （2）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職）을 상실한다．선임 당시 제1항 |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職）을 상실한다．선임 당시 제 1 항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 |
| 우에도 또한 같다． | 우에도 또한 같다． |
| （3）제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 | （3）제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 |
| 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 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
|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4．5］ |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4．5］ |

[^7]| 개점 전 | 개점 후 |
| :---: | :---: |
| 제 19 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br> 1．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br>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 조의 죄 또 는 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2 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2）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 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 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4．1．21＞ <br>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br>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 조의 죄 또 는 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 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 준을 갖추어야 한다． |



$$
\begin{aligned}
& \text { ■ 개정이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 \\
& \text {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 \\
& \text {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 } \\
& \text { 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며,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 } \\
& \text { 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 \\
& \text {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 } \\
& \text { 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개정된 「민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 \\
& \text { 한정후견인은 상담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노리법 } \\
& \text { 개정 전 }
\end{aligned}
$$

| 개정 전 |  |
| :---: | :---: |
| 제42조(결격 사융 후 <br> 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 넹 <br>  <br> 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br> $2013.8 .13>$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1．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br> 3．제 43 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5．임원 중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br> 3．제 43 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5．임원 중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8]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153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3 7}$ 조의 3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3．3．23＞ 1．「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정 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br>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3．마약，대마，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수산 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해양수 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br> 4．이 법，「수의사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농 수산물 품질관리법」，r의료법」，「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제 37 조의 3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3．3．23， 2014．3．18＞ <br> 1．「정신보건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br>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3．마약，대마，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수산 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해양수 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br> 4．이 법，「수의사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농 수산물 품질관리법」，「의료법」，r약사법」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 |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한 사람 |
| 5．제37조의 1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 |  |
| 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 | 5제37조의 1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br> 될 20ㅓㅓ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본 <br> 조신설 2011．7．21］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것임． ل $\frac{\frac{1}{10}}{\frac{10}{7}}$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 12480 호，2014．3．18，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 ■ 법령명 ：수의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5}$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r> 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0．5．25，2011．8．4＞ <br> 1．「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정 | 제 $\mathbf{5}$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r> 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0．5．25，2011．8．4，2014．3．18＞ <br> 1．「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정 |

155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3．마약，대마（大麻），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중독자．다만，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 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4．이 법，「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동 물보호법」，「의료법」，「약사법」，「식품위생법」또는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0．1．25］ |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3．마약，대마（大麻），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중독자．다만，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 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4．이 법，「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동 물보호 법」，「의료법」，「약사법」，「식품위생법」또는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0．1．25］ |

■ 개정시기 ：［법률 제12432호，2014．3．18，일부개정］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여，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156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63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09．6．9＞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br> 5．임원 중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 법인 | 제 63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있는 법인［전문개정 2013．7．30］ |

■ 개정이유 :부칙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63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령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1 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 제 12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1 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4.1.7>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 제 12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58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 | 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 |
|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전문개정 2009.1.30] | [전문개정 2009.1.30]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208호, 2014.1.7,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시설 검사 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합격증명서 부 착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라 금치
 관리업 영위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40 조의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0 조제 1 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br> 5. 임원 중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br> [본조신설 2011.7.14] | 제 40 조의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0 조제 1 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br> 5. 임원 중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br> [본조신설 2011.7.14] |

[^9]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
\begin{aligned}
& \square \text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text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 \\
& \text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
\end{aligned}
$$
\]

## ■ 법령명 ：약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5}$ 조（결격 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7．10．17，2011．12．2，2012．2．1＞ <br> 1．「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전 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금치산자－한정치산자 <br> 3．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br> 4．「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 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 | 제 $\mathbf{5}$ 조（결격 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7．10．17，2011．12．2，2012．2．1，2014．3．18＞ <br> 1．「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전 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br> 3．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br> 4．「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 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 |


| 개정 전 |  |
| :---: | :---: |
| 깃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후 |  |
| 긴자간 또는 약젠체비를 즐 속인 급하는문 해당한다．이하 같다）， | 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는 딘를 체를 직급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하 같다）， |
|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
| 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 | 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 |
|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5．「형법」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 5．「형법」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
|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 |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 |
| 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개정시기 ：［법률 제12450호，2014．3．18，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피해구제급여의 유형，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며，약국을 개설등록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복약지도서를 통한 복약지도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frac{\text { से }}{\frac{1}{10}}$
 이해하기 보호하고， 릉아남ㅁㄴㅗㅗ
피해구제절차邦윽ㅈㄱ응 릉

안전관리책임자를 자가 아닌 사람이 를 통해 환자들이
주요내용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나．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자격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
| :---: | :---: |
|  |  |
| ■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
| 개정 전 | 개정 후 |
|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1）제59조에 따른 재 심사청구를 심리•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23＞ <br> （2）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 중 1 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br> （3）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 명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다만，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 |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1）제59조에 따른 재 심사청구를 심리•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23＞ <br> （2）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 중 1 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br> （3）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 명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다만，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 |


| 개정 전 | 佼 |
| :---: | :---: |
| 관이 소속 3 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3．23＞ <br> 1． 3 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br> 2．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 년 이상 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br>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br> 4．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 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br> 5．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 <br>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br>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관이 소속 3 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3．23＞ <br> 1． 3 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br> 2．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 년 이상 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br>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br> 4．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 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br> 5．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 <br>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14．3．18＞ <br> 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
| :---: | :---: |
|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 |  |
| 행이 낕행인 깥나거나（짓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
|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  |
|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5）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 | （5）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
| 되，연임할 수 있다．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 연임할 수 있다．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
|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6）심사위원회의 조직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6）심사위원회의 조직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 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5．27］ | 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5．27］ |

[^10]|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5 3}$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br>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 실된 사람 <br> [전문개정 2012.1.26] |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8>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 실된 사람 <br> [전문개정 2012.1.26] |

개정시기 : [법률 제12678호, 2014.5.28,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으로 현재 44 개가 운영 중에 있으나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설립기관의 지분율이 $20 \%$ 미만으로 하락하는


人주요내용
인"으로 변경함(제53조제1호).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br>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br>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 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제된 후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6. 제 51 조제 1 항에 따른 개선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7.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 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br>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br>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 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제된 후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6. 제 51 조제 1 항에 따른 개선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7.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 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있는 자 <br> 9. 제 28 조 또는 제 29 조를 위반하여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 로 인하여 당 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11.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br> (2) 임원에 관하여 제 1 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br> (3) 제 2 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있는 자 <br> 9. 제 28 조 또는 제 29 조를 위반하여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 로 인하여 당 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11.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br> (2) 임원에 관하여 제 1 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br> (3) 제 2 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 개정시기 : [법률 제12485호, 2014.3.1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1．6．7， 2013．8．13＞ <br> 1．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정신질환자 <br> 3．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br>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 년（「아동복지법」 제 17 조를 위반한 경우에 는 10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7．제 45 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 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 제 1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1．6．7， 2013．8．13，2014．5．28＞ <br>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의 정신질환자 <br>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의 마약류에 중 독된 자 <br>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 는 10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 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8．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 년（「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9．제 23 조의 3 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 문개정 2007．10．17］ |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7．제 45 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 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br> 8．제 54 조에 따라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9．제 23 조의 3 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

■ 개정시기 ：［법률 제12697호，2014．5．28，일부개정］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br> 대표로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6.7]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br> 대표로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6.7] |

$\square$ 개정이유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
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며,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4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0 조제 1 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br>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3. 제 17 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 3 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 14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0 조제 1 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br>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3. 제 17 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4. 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 제 85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br> 1. 18 세 미만의 사람 | 제 85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1. 18 세 미만의 사람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 제 86 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 제 86 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br>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 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 - 부품 등의 납품 - 검수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129 조•제 130 조•제 132 조 및 제 133 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개정시기 : [법률 제12666호, 2014.5.21, 일부개정]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주요내용
>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4조제1호 및 제 85 조제 2 호 ).

법령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 개 |
| :---: | :---: |
| 제 6 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br>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 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 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 제 6 조(임원의 결격사유) <br> (1)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br>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 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br> 5．이 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 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6．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 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br> （2）임원이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br> （3）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 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br> 5．이 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 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6．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 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br> （2）임원이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br> （3）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 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 법령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개 | 개정 후 |
| :---: | :---: |
| 제 7 조(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업을 할 수 없다. <br>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r> 2. 제 8 조 및 제 9 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한 법인 <br> 3.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br> 1.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제 7 조(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업을 할 수 없다. <br>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r> 2. 제 8 조 및 제 9 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한 법인 <br> 3.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6.3> |

179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형법」 제 87 조부터 제 90 조까지，제 92 조，제 101 조，「군 형법」제 5 조부터 제 8 조까지，제 9 조제 2 항，제 11 조부터 제 16 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 3 조부터 제 9 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br> （3）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제4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형법」 제 87 조부터 제 90 조까지，제 92 조，제 101 조，「군 형법」제 5 조부터 제 8 조까지，제 9 조제 2 항，제 11 조부터 제 16 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 3 조부터 제 9 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br> （3）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제4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begin{aligned}
& \text { 격사유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 \\
& 181
\end{aligned}
$$

| 개정 전 |  |
| :--- | :--- |
| 제 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 9 조(임원의 경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2. 미성년자 | 2. 미성년자 |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
|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 |
| 나 정지된 사람 | 나 정지된 사람 |
| [전문개정 2010.3.17] | [전문개정 2010.3.17]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769호, 2014.10.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재단

그러나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법령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
| :---: | :---: |
| 제3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인인 경우 그（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 다．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7．16＞ |
|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 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
|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
| 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이 법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 | 4．이 법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
| 서 그 등록의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의 취소 후 2년이 경과하 <br> 지 아니한 자 |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11913호，2013．7．16，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없음
■ 법령명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9 조（임원의 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br> 1．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이 법，「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 | 제 9 조（임원의 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 정 2014．10．15＞ <br>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이 법，「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또는 「정보통신망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br> 4.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 이 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6.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 분,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처분 또는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지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허 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br> (2) 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 |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br> 4.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 이 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6.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 분,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지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허 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br> (2) 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연히 퇴직한다. |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 |
| (3)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 연히 퇴직한다. |
| 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3)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br>  <br> 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761호, 2014.10.15, 일부개정]
■ 개정이유:없음
■ 법령명 : 전문심리위원규칙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3 조(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 | 제 3 조(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 |
| 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2>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

186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 예기간중 에 있는 사람 <br>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사람 <br>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br>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br> (2)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br> (3)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 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br>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br>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 은 행위 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 예기간중 에 있는 사람 <br>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사람 <br>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br>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br> (2)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br> (3)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 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br>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br>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 은 행위 가 있다고 인정될 때 |

$\square$ 개정시기 : [대법원규칙 제2559호, 2014.10.2,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시행(2013.7.1.)에 따른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전문심리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3조제1항)
$\square$ 법령명 : 전자서명법

| 개정 전 |  |
| :---: | :---: |
| 제 $\mathbf{5}$ 조(결격사유) 후 |  |
| 기관으롬 각호의 1에 해당받아ㄴㅡㅡㄴ 수 아는다. 공인인증 | 제 $\mathbf{5}$ 종 $2005.3 .31>$ |
|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 |  |
|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
| 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
|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

188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
|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
| 또는 정지된 자 | 또는 정지된 자 |
| 마.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 | 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 |
| 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 년이 경과 | 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 년이 경과 |
| 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 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
| 2.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 | 2.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 |
| 되지 아니한 법인 | 되지 아니한 법인 |

[^11]|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1)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 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 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br> (2) 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60 조에 따른 감리원 이 될 수 없다. <br> (3)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1)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 58 조제 1 항 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14.1.28>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 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br> (2) 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60 조에 따른 감리원 이 될 수 없다. <br> (3)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시기 : [법률 제12346호, 2014.1.28, 일부개정]
제 61 조제 1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부칙 제 2 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 제 5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본다 제10429호 법률

포함하는 것으로


$\square$
$\square$
또는
$\begin{array}{r}5 \\ \hline \text { Tis } \\ \hline\end{array}$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0 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1)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 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 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br> (2)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br> (3)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1 호, 제 5 호, 제 6 호 또는 제 7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br>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br> 2. 사망하였을 때 <br> 3. 제 5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 하게 되었을 때 <br>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 제 10 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1)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 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 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br> (2)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br> (3)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br>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br> 2. 사망하였을 때 <br> 3. 제 5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 하게 되었을 때 <br>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 회 이상 받았을 때 <br>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br>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br> (4)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br>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 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br>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 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 하지 아니한 경우 <br>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br>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2 항에 따 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 회 이상 받았을 때 <br>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br>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br> (4)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br>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 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 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br>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 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 하지 아니한 경우 <br>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br>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2 항에 따 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14.3.18>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br>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6. 제 3 항제 1 호•제 5 호 또는 제 7 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br> (7)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 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br> (8) 경기 시행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br>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6. 제 3 항제 1 호•제 5 호 또는 제 7 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br> (7)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 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br> (8) 경기 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나 제6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 | 나 제6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 |
|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br> 다. [전문개정 2013.4.5]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434호, 2014.3.18,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여, 싸움소 주인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법령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 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94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삭제＜2012．1．17＞ <br> 5．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 2 편제 1 장 또는 제 2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7．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있는 법인 <br> ［전문개정 2009．3．25］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삭제＜2012．1．17＞ <br> 5．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 1 장 또는 제 2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7．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있는 법인 <br> ［전문개정 2009．3．25］ |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 12680 호，2014．5．28，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와 히
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민법」
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려는 것임．
■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34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제34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 |
| 1．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 | 정 2014．10．15＞ |
| 는 법인 | 1．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 |
| 가．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는 법인 |
|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가．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96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 <br> 마. 제 37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 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 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만 해당한다) <br> 2. 제 37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 <br> 마. 제 37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 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 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만 해당한다) <br> 2. 제 37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녁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

률
개정(법률

$$
\begin{aligned}
& \text { 부 록 } \\
& \text { 이에 } \\
& \text { 것임. }
\end{aligned}
$$

## ■ 법령명 : 조정위원규칙

| 개점 | 개정 후 |
| :---: | :---: |
| 제 3 조(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 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1.2.7, 2007.6.1, 2009.2.17> <br>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br>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br> 3.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br> 4.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 터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br> 5.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 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 3 조(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 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1.2.7, 2007.6.1, 2009.2.17, 2014.5.30> <br>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br>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br> 3.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 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br> 4.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 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br> 5.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 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98


| 개정 전 |  |
| :--- | :--- |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의 내용 등에 비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 |
| 추는 사건의 내용 등에 비ㅇㅟㅟ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 추어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
|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 |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 |
| 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신설 2007.6.1> | 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신설 2007.6.1> |
| 1.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자 | 1.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자 |
| 2. 민사•가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 2. 민사•가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
| 3.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 3.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

■ 개정시기 : [대법원규칙 제2537호, 2014.5.30, 일부개정]
개정이유:

$\diamond$ 주요내용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 3 조제 1 항)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1) 법 제 43 조제 7 항제 2 호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 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 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br> (2)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 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 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 제 50 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1) 법 제 43 조제 8 항제 2 호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 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 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4.4.24> (2)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 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 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



| 개정 | 개정 후 |
| :---: | :---: |
| (3)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 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 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 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br> 1. 입후보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br> 2. 입후보자가 1 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 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br>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 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br>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br>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 (3)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 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 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 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br> 1. 입후보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br> 2. 입후보자가 1 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 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br>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 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br>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br> 6. 제 50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 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br>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 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br>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br>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10. 제 58 조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 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 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br>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 |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br> 6. 제 50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 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br>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 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br>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br>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10. 제 58 조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 기수선충당금 등을 3 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br>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 |



| 개정 | 개정 |
| :---: | :---: |
| 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선출 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 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br> 1. 회장 1 명 <br> 2. 감사 1 명 이상 <br> 3. 이사 2 명 이상 <br> (6)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500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 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 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 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br> 1. 후보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br> 2. 후보자가 1 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 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br> (7)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 | 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선출 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 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br> 1. 회장 1 명 <br> 2. 감사 1 명 이상 <br> 3. 이사 2 명 이상 <br> (6)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500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 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 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 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br> 1. 후보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br> 2. 후보자가 1 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 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br> (7)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신설 2013．1．9＞ <br> 1．동별 대표자：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 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br> 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 의의 회장과 감사：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br> 3．제 5 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관리규 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br> （8）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0．7．6，2013．1．9＞ <br> （9）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2010．7．6，2013．1．9，2013．3．23＞ | 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신설 2013．1．9＞ <br> 1．동별 대표자：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 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br> 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 의의 회장과 감사：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br> 3．제 5 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관리규 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br> （8）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0．7．6，2013．1．9＞ <br> （9）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2010．7．6，2013．1．9，2013．3．23＞ |

[^12]204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0 조（등록）（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2009．12．30，2013．3．23， 2013．8．6＞ <br> 1．창업자에 대한 투자 <br>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에 대한 투자 <br> 2 의 2．「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 15 조 및 제 15 조의 2 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br> 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4 조의 3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 제 10 조（등록）（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2009．12．30，2013．3．23， 2013．8．6＞ <br> 1．창업자에 대한 투자 <br>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에 대한 투자 <br> 2 의2．「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 15 조 및 제 15 조의 2 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br> 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4 조의 3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업무의 집행 <br> 4．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br> 5．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br> 6．제 1 호，제 2 호，제 2 호의 2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업 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br> （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8．3，2009．12．30，2013．8．6＞ <br>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br> 2．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 한다． <br> 가．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나．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br>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 업무의 집행 <br> 4．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br> 5．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 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br> 6．제 1 호，제 2 호，제 2 호의 2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업 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br> （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8．3，2009．12．30，2013．8．6， 2014．1．21＞ <br>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br> 2．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 한다． <br> 가．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나．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 <br> 마．「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br>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바．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사．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 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br> 아．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 <br> 마．「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바．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사．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 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07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br> 자. 제 12 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 43 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 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 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 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 나지 아니한 자 <br> 차. 제 4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2의2.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 출 것 <br>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 과 시설을 보유할 것 <br>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 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아.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br> 자. 제 12 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 43 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 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 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 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 나지 아니한 자 <br> 차. 제 4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2의2.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 출 것 <br>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 과 시설을 보유할 것 <br>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 |



| 개정 전 |  |
| :---: | :---: |
| (3) 제2항제2호의 2 에서 정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 | 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 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 주 | (3)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 |
| 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6> | 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 주 |
| (4)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 | 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6> |
| 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 | (4)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제2호의 2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 |
| 는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취득 주식의 처분 | 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 |
| 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6> |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취득 주식의 처분 |
|  | 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6> |

[
$\square$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회수를 위하여 개설된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은 중소기
업창업투자조합의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20 \%$ 로 제한하고 있어, 상장주식시장에
서 일정액 이상 투자한 경우 코넥스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의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상장주식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3년 7월 1일부
터 시행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 하려는 것임.
$\diamond$ 주요내용
가. 개정 「민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
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대체함(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 31 조제2항제 2 호가목).
■ 법령명 : 지방공무원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br>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 |

210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 개정 후 |
| :---: | :---: |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 나 정지된 사람 <br>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 나 정지된 사람 <br>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

■ 개정시기 ：［법률 제11997호，2013．8．6，일부개정］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3．7．공포，2013．7．1．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 | 제 정 |
| :---: | :---: |
|  | 제 10 조（임원의 결격사유 등）（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br> 3．금고（禁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br>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2）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히 퇴직한다． |

212

$213$


214
■ 개정시기 : [법무부령 제827호, 2014.10.13., 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 지 아니한 자 <br>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br> （4）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자격검정， 연수，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 나지 아니한 사람 <br>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지된 사람 <br> （4）제 1 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자격검정，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전문개정 2014．3．24］ |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12535호，2014．3．24，일부개정］

[^13]것으로
$$
216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5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 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br>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 지 아니한 자 <br>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br> 6.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 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 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 15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br>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지된 사람 <br> 6. 제 22 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br> [전문개정 2014.1.21] |

217

또는
력이 인这
ए

$$
\frac{x_{1}^{2}}{\lambda} \frac{\dot{x}}{\frac{1}{k}}
$$

$$
\text { 제 } 15 \text { 조제 } 1 \text { 호의 }
$$

제2조에 따라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br>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br>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br>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



## －법령명 ：축산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2 조（수정사의 면허）（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개정 2008．2．29，2013．3．23＞ <br>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br> 2．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br>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 제 12 조（수정사의 면허）（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개정 2008．2．29，2013．3．23＞ <br>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br> 2．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br>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될 수 없다．＜개정 2008．2．29，2010．1．25，2011．8．4＞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에 따른 마약류중독 자．다만，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2013．3．23＞ | 될 수 없다．＜개정 2008．2．29，2010．1．25，2011．8．4，2014．3．18＞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 자．다만，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2013．3．23＞ |
| 제 34 조의 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3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가축거 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제 34 조의 4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3．「가축전염병예방법」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20 조제 1 항（「가 | 제 34 조의 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3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가축거 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4．3．18＞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제34조의 4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3．「가축전염병예방법」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20 조제 1 항（「가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20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본조신설 2012．2．22］ | 축전염병예방법」 제 28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20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본조신설 2012．2．22］ |

[^14]눌 보
파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5 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1) 국토 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br>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 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br> (3)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 1 항에 따라 간행 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 하려는 자(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 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 15 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1) 국토 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br>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 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br> (3)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 1 항에 따라 간행 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 하려는 자(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 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br> （4）제 3 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 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 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 다．＜개정 2013．3．23＞ <br>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3 항에 따 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3．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형법」 제 87 조부터 제 104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br> （4）제 3 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 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 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 다．＜개정 2013．3．23＞ <br>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3 항에 따 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개정 2013．7．17＞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6）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6）제 1 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 제 35 조（수로도서지의 간행 등）（1）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 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 한 전자적 기록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br> （2）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 행하는 자（이하＂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 다．＜개정 2013．3．23＞ <br> （3）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3．3．23＞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 35 조（수로도서지의 간행 등）（1）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 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 한 전자적 기록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br> （2）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 행하는 자（이하＂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 다．＜개정 2013．3．23＞ <br> （3）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3．3．23， 2013．7．17＞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이 법이나 「국가보안법」또는「형법」 제87조부터 제 104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 |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3．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4．제6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판매대행 수수료，그 밖에 수 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br> （5）판매대행업자는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고，최 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수로도서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br> （6）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 1 호의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개정 2013．3．23＞ <br> 1．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다만，일 | 니한 자 <br> 3．이 법이나「국가보안법」 또는「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4．제 6 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판매대행 수수료，그 밖에 수 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br> （5）판매대행업자는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고，최 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수로도서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br> （6）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 1 호의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개정 2013．3．23＞ <br> 1．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다만，일 |


| 갱ㅇㅇ 전 | 개정 후 |
| :---: | :---: |
| 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r> 2．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br> 3．제 5 항을 위반하여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 니하거나，수로도서지를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 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br> 4．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br> （7）판매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r> 2．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br> 3．제5항을 위반하여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 니하거나，수로도서지를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 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br> 4．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br> （7）판매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 104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br>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3．7．17＞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이 법이나「국가보안법」 또는「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3．이 법이나 「국가보안법」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4．제 52 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br> 5．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법인 |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3．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 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4．제 52 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br> 5．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법인 |
|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 <br>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3．7．17＞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4. 제9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 4. 제9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
| 아니한 자 | 아니한 자 |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자가 있는 법인 | 는 자가 있는 법인 |

■ 개정시기 : [법률 제11943호, 2013.7.17,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부칙 제 3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15 조제 5 항제 1 호, 제 35 조제 3 항제 1 호, 제 47 조제 1 호 및
제 94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0 조의 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0 조의 3 의 | 제 10 조의 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0 조의 3 의 |



| 개정 전 | 개 |
| :---: | :---: |
|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 <br> 6. 제 10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 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br> [본조신설 2004.1.29] |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 10.15>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 <br> 6. 제 10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 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br> [본조신설 2004.1.29] |

■ 개정시기 : [법률 제12764호, 2014.10.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2011．3．7．공포，2013．7．1．시행）되었음．
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령명 ：특허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3 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1）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 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특허에 관한 절 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다만，미성년자와 피한정후 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 <br> （2）제 1 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없이 상대방 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제 3 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1）미성년자•피한정후견 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그 밖의 절차（이하＂특허에 관 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다만，미성년자와 피한 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br> （2）제 1 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 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개정 1995.1.5, 1997.4.10, 2006.3.3,2014.1.21> |  |
| (3) 삭 제 <2006.3.3> | [전문개정 2014.6.11] |

■ 개정시기: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없음
■ 법령명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8}$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 $\mathbf{8}$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2. 미성년자 | 2. 미성년자 |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 |
| 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09.12.30] | 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09.12.30] |

■ 개정시기 : [법률 제12770호, 2014.10.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of
$\frac{1}{2}$
$\frac{N}{1}$
स
$\frac{0}{0}$
$\frac{0}{0}$
$\frac{0}{0}$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 9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사람은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는 사람은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2. 미성년자 | 2. 미성년자 |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
|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 |
| 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0.3.17] | 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0.3.17]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771호, 2014.10.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국제협력
그러나 「민법」 개정에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 법령명 : 한국마사회법

| 개정 전 |  |
| :--- | :--- |
| 제 11 조(마주의 등록 등) (1) 말을 경마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 제 11 조(마주의 등록 둥) (1) 말을 경마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
|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 항의 등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 항의 등 |
| 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
|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 |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 |
| 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 |
| 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6.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br> 7. 조교사, 기수 및 마필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 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br> 8. 제 3 항제 3 호 • 제 5 호, 제 4 항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 - 제 7 호-제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9. 임원(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법인 <br> (3)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br>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br>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br> 4.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제 6 호•제 7 호 또는 제 9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br>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6.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br> 7. 조교사, 기수 및 마필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 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br> 8. 제 3 항제 3 호 • 제 5 호, 제 4 항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 • 제 7 호•제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9. 임원(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법인 <br> (3)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br>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br>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br> 4.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제 6 호•제 7 호 또는 제 9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br>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叫
파

| 개정 전 | 개정 |
| :---: | :---: |
|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br> (4)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 정 2013.3.23> <br>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 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 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br>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 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 하지 아니한 경우 <br> 3. 조교사•기수 또는 마필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br>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 구 또는 약속한 경우 <br>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 |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br> (4)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 정 2013.3.23> <br>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 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 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br>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 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 하지 아니한 경우 <br> 3. 조교사•기수 또는 마필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br>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 구 또는 약속한 경우 <br>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br>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한 경우 <br>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br>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br> (5) 제 1 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 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br>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한 경우 <br>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br>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br> (5) 제 1 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여,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개정 전 |  |
| :---: | :---: |
| 개정 후 |  |
| 제 15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 15 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자는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 | 는 자는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 |
| 다. <개정 2009.12.29> | 다. <개정 2009.12.29, 2014.3.18> |


| 개정 전 |  |
| :--- | :--- |
|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후 위반 |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
| 한 때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 | 한 때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 |
| 자에 대하여 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6개월 이내의 | 자에 대하여 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6개월 이내의 |
|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 |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 |
| 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013.3 .23,2014.1 .7>$ | $2013.3 .23,2014.1 .7>$ |
| (3)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2항에 | (3)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2항에 |
|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
|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4)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 | (4)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 |
|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

[^15]239

| 개정 전 |  | 개정 후 |
| :---: | :---: | :---: |
| 제20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  |  |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제 20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  |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  |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489호, 2014.3.18, 일부개정]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begin{aligned}
& \text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text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 \\
& \text { 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 } \\
& \text { 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end{aligned}
$$

■ 법령명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3 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 $\mathbf{1 3}$ 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자는 제 10 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 자는 제 10 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br> 없다. <개정 2014.3.24> |
|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 |
| 1.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 |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 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
|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그 면허가 | 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r> 법인 |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그 면허가 <br>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법인 |  |



$$
\begin{aligned}
& \square \text { 개정시기 : [법률 제12548호, 2014.3.24, 일부개정] } \\
& \square \text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text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 \\
& \text { 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 \\
& \text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되, } \\
& \text {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 \\
& \text {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 \\
& \text {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공공의 안전 및 다수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는 피한정후 } \\
& \text { 견인을 배제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한정후견인을 원칙적으로 결격사유로 정하여 두고, 피한정후견인이 해당 } \\
& \text { 사무에 관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end{aligned}
$$

## 법령명 : 해양환경관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1 0 1}$ 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br> 당하는 자는 임 원이 될 수 없다.당하(은 짐원의 근 열격사윤이) (딜 수 앖다. |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br>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br>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br> (2) 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 직한다. <br>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개정 2014.5.21> <br>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br>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br>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br> (2) 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 직한다. <br> (3)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diamond$ 주요내용

[^16]나.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원 등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
(제 71 조제 1 호, 제 81 조제 1 호, 제 87 조제 1 호 및 제 101 조제 1 항제 2 호).
■ 법령명 : 해외이주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1)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 | 제 $\mathbf{1 0}$ 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1)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 |
| 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 원으로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 원으로 |
|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
| 1. 제3조제2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 2014.10.15>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제3조제2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
|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 |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 |
| 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 |
|  | 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개정시기 : [법률 제12772호, 2014.10.15, 일부개정]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begin{aligned}
& \text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text {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
& \text { 그러나「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 } \\
& \text { 견 제도가 시행됨. } \\
& \text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 \\
& \text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end{aligned}
$$

## 법령명 ：해운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8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2．6．1＞ 1．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선박안전법」，「해사안전법」，「선원법」，「해양환 경관리법」 또는「개항질서법」（이하 이 조에서＂관계 법 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 제 8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2．6．1， 2014．3．18＞ <br>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선박안전법」，「해사안전법」，「선원법」，「해양환 경관리법」또는 $\mathbf{r}$ 개항질서법」（이하 이 조에서＂관계 법 |

247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br> 4．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제 19 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대표자가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 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br> 4．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제 19 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대표자가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

■ 개정시기 ：［법률 제12492호，2014．3．18，일부개정］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여，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
려는 것임．
부록1．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呈悩 극 <br>  <br>  <br>  <br>  <br>  <br>  <br> 好如 <br>  <br>  <br>  <br>  <br>  <br>  |  |
| :---: | :---: |
| 局 1 | － |


| - | 신 설 |
| :---: | :---: |
|  | 한 사람 |
|  | 5．「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 <br> 2 2호 또는「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 <br> 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br> ［본조신설 2012．11．30．］ |

$\square$ 개정시기 ：［본조신설 2012．11．30．］
■ 개정이유 ：없음
■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36 조（임원의 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 |
| 1．금치산자 | 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개정 |
| 2．한정치산자 | 2014．1．21＞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br>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br> (2) 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br> (3)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1. 피성년후견인 <br> 2. 피한정후견인 <br>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br>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br> (2) 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 34 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 직된다. <개정 2014. 1.21> <br> (3) 제 2 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 4 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제목개 <br> 정 2014.1.21] |

■ 법령명 : 화학물질관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21조(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 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
| 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 |
|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독물영 | 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 |
| 업의 경우에 한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될 수 없다. | 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하여 유해화학물질 영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업을 할 수 없다. |

부록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
| 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 아니한 자 | 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
| 4.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 | 아니한 자 |
| 니한 자 | 4. 제 35 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 |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 니한 자 |
|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5. 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
|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17]부록 2.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33）
눌 1
■ 법령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31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7．5．17＞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폐 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 |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28 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br>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폐 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3）이 표는 2014년 10 월 30 일 현재，국가법령정보센터 DB 를 활용하여 법령명，개정 전•후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32조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 |
| 4.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 | 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4.3.24] [시행 |
| 자가 있는 법인 | 일:2014.3.24] 제31조제1호 |

■ 개정시기 : [법률 제12516호, 2014.3.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없음
부칙 제 14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31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먹
부록 2．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 5 조，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다만，고압가스를 제조하려 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 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1＞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형법」 제 172 조，제 172 조의 2 ，제 173 조，제 173 조의 2 ，제 174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미수범 은 제외한다），제 175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 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 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 5 조，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다만，고압가스를 제조하려 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 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1， 2014．1．21＞ <br>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형 법」 제 172 조，제 172 조의 2 ，제 173 조，제 173 조의 2 ，제 174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미수범 은 제외한다），제 175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시가스사업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 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형법」 제 172 조，제 172 조의 2 ，제 173 조，제 173 조의 2 ，제 174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미수범 은 제외한다），제 175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시가스사업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 （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5．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대표자가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전문개정 2007．12．21］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형법」 제 172 조，제 172 조의 2 ，제 173 조，제 173 조의 2 ，제 174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미수범 은 제외한다），제 175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시가스사업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 （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5．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대표자가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전문개정 2007．12．21］ |

届

聚
夜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 12283 호， 2014.1 .21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 }^{\text {민법」의 개정으로 } 2013 \text { 년 7월 } 1 \text { 일부터 }}$
경된 것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 • 등록의

[^18]부록 2.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 지된 자 <br> （3）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 급 내지 3 급으로 하고，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4）보건교육사 1 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 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br> （5）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 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본조신설 2003．9．29］ |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 지된 자 <br> （3）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 급 내지 3 급으로 하고，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4）보건교육사 1 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 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br> （5）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 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본조신설 2003．9．29］ |

개정시기 ：［법률 제12446호，2014．3．18，일부개정］
研
파
तथ
H1

$\frac{\text { 监 }}{\text { 市 }}$
0
0
100
10
10
扫

피성년후견인으
되도록
O
焐
少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는 것임．
260
부록 2．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 법령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1）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6，2013．3．23＞ <br> 1．삭제＜2012．1．26＞ <br> 2．삭제＜2012．1．26＞ <br> 3．삭제＜2012．1．26＞ <br>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2013．3．23＞ <br> 1．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br> 2．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br> 3．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1）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6，2013．3．23＞ <br> 1．삭제＜2012．1．26＞ <br> 2．삭제＜2012．1．26＞ <br> 3．삭제＜2012．1．26＞ <br>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2013．3．23， 2014．1．21＞ <br> 1．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br> 2．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개정 전 | 개정 |
|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r>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 <br>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 • 기관 또는 단체 인 경우 <br> 5. 제 35 조의 7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 니한 경우 <br>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 3.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r> 가. 피성년후견인 <br>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 <br>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 - 기관 또는 단체 인 경우 <br> 5. 제 35 조의 7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 니한 경우 <br>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

부록 2．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2013．3．23＞ <br> （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 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 여야 한다．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1．26，2013．3．23＞ <br> （5）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 4 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26，2013．3．23＞ （6）제 1 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 등의 위탁자，이용자，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 업화와 관련된 자（이하＂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26＞ <br> （7）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또는 금액은 기술 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2013．3．23＞ <br> （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 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 여야 한다．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1．26，2013．3．23＞ <br> （5）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26，2013．3．23＞ （6）제 1 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 등의 위탁자，이용자，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 업화와 관련된 자（이하＂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26＞ <br> （7）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또는 금액은 기술 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


| 개정 전 |  |
| :---: | :---: |
| 다．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분장관은 후 |  |
| 벍용기간을 조건으로 | 다．잉인할 수 영우 싰다．＜갑탱상자웡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
| （8）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 （8）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
| 다．＜개정 2012．1．26，2013．3．23＞［전문개정 2010．4．12］ | 다．＜개정 2012．1．26，2013．3．23＞［전문개정 2010．4．12］ |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12284호，2014．1．21，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
편，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
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부록 2.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 법령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1)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 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r> (2)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br> 1.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r>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 는 경우 <br>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2.22> <br>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 지 아니한 사람 |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1)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 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r> (2)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br>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r>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 는 경우 <br>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4.3.24> <br>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 견인 <br>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 지 아니한 사람 |

265

| 개정 전 |  |
| :---: | :---: |
| 3. 제82조제 5 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 3. 제 82 조제 5 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
|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 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 (6)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
| 있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7.21] |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 |
|  | 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  |
|  | 있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7.21] |




 본다.

민법

[^19]267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25 조(중도매업의 허가) (1)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 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r> (2)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br>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r>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 는 경우 <br>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2.22> <br>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 지 아니한 사람 |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1)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 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r> (2)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br> 1.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r>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 는 경우 <br>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4.3.24> <br>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 견인 <br>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 지 아니한 사람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3. 제 82 조제 5 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br> 5. 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있는 법인 <br>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br> (4)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 3 항제 5 호에 해당하게 되 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 정 2012.2.22> <br> (5)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br> (6)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 1 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 | 3. 제 82 조제 5 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br> 5. 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있는 법인 <br>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br> (4)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 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 정 2012.2.22> <br> (5)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br>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 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 찰에 불참하는 행위 <br>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 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 (6)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
| 있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7.21] |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 |
|  | 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
|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
|  | 있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7.21] |

■ 개정시기 : [법률 제12509호, 2014.3.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없음
제27조제2항제1호 및

I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70



| 제영 | 개정 |
| :---: | :---: |
| 제 4 조（결격 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형법」제 172 조，제 172 조의 2 ，제 173 조，제 173 조의 2 ，제 174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미수범 은 제외한다），제 175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제 3 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 $\mathbf{4}$ 조（결격 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4．1．21＞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형 법」 제 172 조，제 172 조의 2 ，제 173 조，제 173 조의 2 ，제 174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미수범 은 제외한다），제 175 조（제 164 조제 1 항 • 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제 3 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5.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7.12.21] |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7.12.21] |

$\square$ 개정이유: r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square$ 부칙 제 3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4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법령명 : 상공회의소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2 3}$ 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br>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옶의아. | 둰의 자격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br>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1．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br> 2．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br>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br> 4． 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br> 5．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7．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 （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2）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전문개정 2011．5．24］ | ＜개정 2014．1．21＞ <br> 1．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br> 2．피성년후견인 <br>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br> 4． 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br> 5．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7．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 （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2）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전문개정 2011．5．24］ |

[^20]
속 2. 핀ㅇㅇㅜㅜㄴㄴㄴㄴㄴㅇㅣ 각제된 개성 밥링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자격제한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
하려는 것임.
■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23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본다.

## ■ 법령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개정 전 |  |
| :--- | :--- |
| 제 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제 $\mathbf{6}$ 조종경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
| 1. 미성년자 | $2014.1 .21>$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미성년자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피성년후견인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

275

| 개정 전 |  |
| :---: | :---: |
|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녕이 주 나지 아니한 자 | 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영업장이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
|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영업장이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는 법인 [전문개정 2009.1.30] |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는 법인 [전문개정 2009.1.30] |

부록 2．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 법령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5}$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3 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 6 조의 3 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1．5．24＞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형법」제 172 조，제 172 조의 2 ，제 173 조，제 173 조의 2 ，제 174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미수범 은 제외한다），제 175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제 3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제 $\mathbf{5}$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3 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6조의 3 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1．5．24，2014．1．21＞ <br>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형법」 제 172 조，제 172 조의 2 ，제 173 조，제 173 조의 2 ，제 174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미수범 은 제외한다），제 175 조（제 164 조제 1 항，제 165 조 및 제 166 조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제 3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br> 아니한 자 |
| 6. 빕인은 다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중 <br>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중 <br>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297호, 2014.1.21, 일부개정]
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며,
$\square$ 부칙 제 3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5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 개정이유 :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 -


[^21]부록 2.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법령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7.28] |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br> 1. 피성년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7.28] |

개정시기 : [법률 제12521호, 2014.3.24,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 부칙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60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부 록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 14 조, 제 16 조제 1 항 및 제 17 조 | 제 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 14 조, 제 16 조제 1 항 및 제 17 조 |
|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 부터 제 19 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 |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 |
| 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 | 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니하다. <개정 2014.3.18> |
| 1. 어선의 총톤수 측정 • 개측의 신청 | 1. 어선의 총톤수 측정 • 개측의 신청 |
|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
|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
|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
|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
| 2008.3.28] | 2008.3.28]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482호, 2014.3.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경
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
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는바,
어선소유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되, 피한정후견인을 동 규정에
서 배제하려는 것임.
■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법령명 : 어장관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009．4．22，2013．8．13＞ <br> 1．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이나 「수산업법」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 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 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09．4．22，2013．8．13，2014．3．18＞ <br>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 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 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2]

>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바,
대체하고，피한정후견인을 등록제한사
피성년후견인으로
只品
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피한정후견인의
$\bar{\delta}$
제한
覑 거임
■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 18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제 19 조제 4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나．
$\square$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 2014．1．21＞ |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피성년후견인 |
|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 |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 |
|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지된 사람 <br> 6．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 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br> （2）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해임된다． <br> （3）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 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지된 사람 <br> 6．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br> （2）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해임된다． <br> （3）제 2 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 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23]284
부록 2．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square$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 37 조제 1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본다． 것으로

## ■ 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 | 개정 후 |
| :---: | :---: |
| 제 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1．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제 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8＞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 <br> 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 <br> 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령명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5}$ 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 $\mathbf{5}$ 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자는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br>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  |
|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1. 피성년후견인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 2．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 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
|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 4．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4．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12300호，2014．1．21，일부개정］
■ 개정이유：「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
을 반영하여，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 5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개점 전 | 개정 후 |
| :---: | :---: |
| 제 8 조（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 다．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4．22＞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이 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또는「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4．제 11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 $\mathbf{8}$ 조（결격사유）（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 1 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 다．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4．22，2014．3．18＞ <br> 1．피성년후견인 <br> 2．이 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또는「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또는「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br> 4．제 11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4]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경
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
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바,
원양어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대표자
인 법인 포함)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 1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법령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 :---: |
| 제 12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다.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89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이 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제 56 조，제 57 조，제 59 조부터 제 61 조까지， r 관세법」 제 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제68조，「관세법」 제 279 조에 따라 처벌된 법인 또는 개 인은 제외한다． <br> 6．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자 <br> 7．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 （해당 법인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 거나 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br> 8．제 15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후 |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이 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이 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5．제 56 조，제 57 조，제 59 조부터 제 61 조까지，「관세법」 제 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제68조，「관세법」 제 279 조에 따라 처벌된 법인 또는 개 인은 제외한다． <br> 6．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자 <br> 7．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 （해당 법인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 거나 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4.14] |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후 <br>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4.14] |

$$
\begin{aligned}
& \square \text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 } \\
& \text { 을 반영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 \\
& \square \text { 부칙 제 } 2 \text {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 12 \text { 조제 } 1 \text {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 10429 \\
& \text {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 2 \text {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 } \\
& \text { 로 본다. }
\end{aligned}
$$

■ 법령명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22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br> 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br> 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
|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
|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
| 중에 있는 사람 | 중에 있는 사람 |

 $\square$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 22 조제 1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본다．

[^25]■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5}$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br> 가．「형법」 제 172 조의 2 （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제 173 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제 173 조의 2 （전기의 경 우만 해당하며，제 172 조제 1 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 제 $\mathbf{5}$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 정 2014．1．21＞ <br>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br> 가．「형법」 제 172 조의 2 （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제 173 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제 173 조의 2 （전기의 경 |

293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외한다), 제 174 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 164 조제 1 항, 제 165 조, 제 166 조제 1 항 및 제 172 조제 1 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 175 조(전기의 경우만 해 당하며, 제 164 조제 1 항, 제 165 조, 제 166 조제 1 항 및 제 172조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br> 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br> 4. 제 3 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br> 5.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br> 6. 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12.26] | 우만 해당하며, 제 172 조제 1 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174 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 164 조제 1 항, 제 165 조, 제 166 조제 1 항 및 제 172 조제 1 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 175 조(전기의 경우만 해 당하며, 제 164 조제 1 항, 제 165 조, 제 166 조제 1 항 및 제 172조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br> 4. 제 3 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br> 5.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br> 6. 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12.26] |

■ 개정시기 : [법률 제12303호, 2014.1.21, 일부개정]
부록 2.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 개정이유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square$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5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법령명 : 전력기술관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1 5}$ 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등록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없다. | 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br> 없다. <개정 2014.1.21> |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br> 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br>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295

| 개정 전 |  |
| :---: | :---: |
| 4．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후 |  |
| 기간 중앵유 예를 섰는 소받고 금 유예 | 4．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
| 5．지간 중에 있는 사람 따라 설계업 • 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 | 5．제16조에 따라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 |
|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
|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전문개정 2008．12．26］ |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전문개정 2008．12．26］ |

[^26]967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9 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3.30> <br>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br> 2. 제 10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3. 대표자가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법인 | 제 9 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3.30, 2014.1.21> <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br> 2. 제 10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3. 대표자가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법인 |
| ■ 개정시기 : [법률 제12306호, 2014.1.21, 일부개정]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응 |  |
| $\square$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  |

부 록
민법
본다.

## ■ 법령명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
| :--- | :--- |
| 제 7 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 제 7 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
| 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 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
|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 |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 |
| 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
|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 |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 |
| 지 아니한 자 | 지 아니한 자 |
|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
| 경우 3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 | 경우 3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 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

[^27]|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 |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 |
| 치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치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6．3＞ |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피성년후견인 |
| 2．「형법」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군형법」중 이적 | 2．「형법」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군형법」 중 이적 |
| 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 의 죄 또는「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문개정 2008.6.13] | [전문개정 2008.6.13]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726호, 2014.6.3, 일부개정]
$\square$ 부칙 제 5 조(금치산자 등의 무선국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 71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
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1 9}$ 조의 $\mathbf{1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r>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9조의 $\mathbf{1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r>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

301
록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 제 19 조의 19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6. 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0.3.22] | 1. 피성년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 제 19 조의 19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br> 6. 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0.3.22] |

개정시기 : [법률 제12473호, 2014.3.18,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 - 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square$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 19 조의 15 제 1 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 년 6 월 30 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부록 2.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을 적용한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
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
| :---: | :--- |
|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1)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
|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 |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 |
| 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 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
|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 |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 |
| 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 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
| 될 수 없다. |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
|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03
록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 제 53 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3) 제 1 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은 1 차 시험과 2 차 시험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br> (4) 중소기업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br> (5) 제 3 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 목, 시험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 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5.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3) 제 1 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은 1 차 시험과 2 차 시험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br> (4) 중소기업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br> (5) 제 3 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 목, 시험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 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시기 : [법률 제12309호, 2014.1.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여, 중소기업의 관련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부록 2.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square$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46 조제 2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본다.
것으로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mathbf{5 1}$ 조(임원의 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지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지된 자 <br>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05

| 개정 전 |  |
| :---: | :---: |
| 5．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 만 원 이상 | 5．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 만 원 이상 |
| 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6．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 6．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
|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 |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 |
|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7．r상법」 제389조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 7．「상법」 제389조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
|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와 같은 조 제2항 |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와 같은 조 제2항 |
| 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2）제 1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2）제 1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 （3）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 （3）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
|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square$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 51 조제 1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方

[^28]■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0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제 15 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또는 「전기사업법」 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5．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또는 「전기사업법」 | 제 10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4．1．21＞ <br>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제 15 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또는「전기사업법」 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5．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또는「전기사업법」 |

307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 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
| 간 중에 있는 자 | 간 중에 있는 자 |
|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
|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전문개정 2010．1．18］ |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전문개정 2010．1．18］ |

[^29]「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여，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 10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
로 본다．
308
부록 2．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법령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17 조의 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1）지원협의 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시•군•구의회 의원，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 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 하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 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8．13，2014．1．21＞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br> 2．금고（禁錭）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1）지원협의 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시•군•구의회 의원，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 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구청장 및 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 하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 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8．13，2014．1．21， 2014．5．20＞ <br> 1．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br> 2．금고（禁錭）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

309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 실된 자 <br> 5．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 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br> （2）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br> 1．제 17 조제 2 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의 선정 <br> 2．제 20 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 한 협의 <br> 3．제 22 조제 4 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br> 4．제 25 조제 1 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br>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r> （3）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전문개정 2007．12．27］ | 중에 있는 자 <br>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 실된 자 <br> 5．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 련하여 「형법」 제 355 조 및 제 356 조를 위반하여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br> （2）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br> 1．제 17 조제 2 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의 선정 <br> 2．제 20 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 한 협의 <br> 3．제 22 조제 4 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br> 4．제 25 조제 1 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br>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r> （3）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전문개정 2007．12．27］ |


개정시기 : [법률 제12622호, 2014.5.20, 일부개정]

- (
■ 법령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 5 조제2 | 제 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 |
|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니한 자 <br>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임원중에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니한 자 <br>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임원중에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315호, 2014.1.21,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항공우주산업사업 중 특정사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부칙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6 조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법령명 : 해양환경관리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71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임원 중에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1. 피성년후견인 <br>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임원 중에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제 81 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1.6.15> | 제 81 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4.5.21>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대표이사가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 |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br> 4．이 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대표이사가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 |
| 제 87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br>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 제 87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14．5．21＞ <br> 1．피성년후견인 <br>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3．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br>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

314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 대표이사가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 |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 대표이사가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 |
| 제 101 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br>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br>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br>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 <br> (2) 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 제 101 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1> <br>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br>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br>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 <br> (2) 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 |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 <br> 직한다. |
| (3) 잔다. 2 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br>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 개정시기 : [법률 제12662호, 2014.5.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대신하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도입 된 데에 맞추어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호(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81 조제 1 호, 제 87 조제 1 호 및 제 101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부록 2．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법령명 ：화장품법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3 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1）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 （이하＂제조업자＂라 한다）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 는 자（이하＂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br>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 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r> 1．「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전 문의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제 3 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1）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 （이하＂제조업자＂라 한다）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 는 자（이하＂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br>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 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4．3．18＞ 1．「정신보건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전 문의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

317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아니한 자 | 자 |
| 3．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 3．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
| 4．이 법 또는 「보건범조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 | 4．이 법 또는「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 |
|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
|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
| 한 자 | 한 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5) 제 1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 (5) 제 1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
| 절차 또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 | 절차 또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 |
| 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30]|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 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5 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 5 조의 2 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br> 1．제 8 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 8 조의 2 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br> 4．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6．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있는 법인［전문개정 2011．4．14］ | 제 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5 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 5 조의 2 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14．1．21＞ <br> 1．제 8 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 8 조의 2 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 2．피성년후견인 <br>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br> 4．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5．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6．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있는 법인［전문개정 2011．4．14］ |



$$
\begin{aligned}
& \square \text { 개정시기 : [법률 제12317호, 2014.1.21, 일부개정] } \\
& \square \text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text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 \\
& \text { 여, } 1 \text { 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자,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자 대한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
& \text { 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
& \square \text {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 10429 \text { 호 } \\
& \text {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
\end{aligned}
$$


[^0]:    3) 백승흠, 현행 성년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 민 사법학 제24호, 2003. 9, 407면 이하 참조.
[^1]:    31)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비교사법 제 21 권 3호(통권 66호), 2014, 1248 면("당해 자격상 직무수행이 사회 전체 또는 위임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위험)의 중대성을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러한 판단 은 주관적 관점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2]:    ■ 개정시기 : [법률 제12426호, 2014.3.18, 일부개정]

[^3]:    개정시기 : [법률 제12269호, 2014.1.21, 일부개정]
    개정시기 : [법률
    개정이유 : 없음

[^4]:    개정시기 : [법률 제12512호, 2014.3.24, 일부개정]

[^5]:    
    
    
    옹카반
    들
    K
    管
    1.1
    $10-1$

    Tol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 12429 호， 2014.3 .18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여 말조려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결격사유에서

[^6]:    ■ 개정시기 : [법률 제12539호, 2014.3.24,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
    여, 선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
    는 것임.

[^7]:    ■ 개정시기 ：［법률 제12479호，2014．3．18，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To
    两
    立」
    
    To
    \＃ 10
    
    후견•한정후견
    피성년후견인과
    
    

[^8]: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12075호，2013．8．13，일부개정］
    ■ 개정시기 : [법률 제12075호, 2013.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없음

[^9]:    ■ 개정시기 : [법률 제12433호, 2014.3.18, 일부개정]

[^10]: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 피한정후견인으官
    O－
    T
    $10-1$
    
    

[^11]:    「민법」이 개정(법률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 개정시기 : [법률 제12762호, 2014.10.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제 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12]:    
    
    奀
    众
    夜
    
    
    $\square$ 개정시기 ：［대통령령 제 25320 호， 2014.4 .24 ，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 ：부칙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3]:    따른 피성년후견인
    
    $\frac{1}{k}$
    $\frac{1}{k}$
    $\frac{1}{k}$
    $\frac{10}{10}$
    
    N
    H
    H
    $\frac{\pi}{\frac{1}{x}}$
    
    
     본다．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比比的

    $$
    \text { 올 }-\mid x \neq y(\underline{y} \text { 믄) } \because Z \|
    $$

[^14]:    

[^15]:    
    01
    0
    0
    0
    欺
    
    -
    
    
    

[^16]: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 준수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
    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역이용협의등 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
    기관에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3항 . 제4항 신설).

[^17]:    B of
    
    

[^18]:    로 대체하고，

[^19]:[^20]:    개정시기 ：［법률 제12293호，2014．1．21，일부개정］

[^21]:    한정치산 슨고의 효

[^22]:    경
    泪
    
    
    0 0
    乱
    0

    룔晶 | 이 |
    | :---: |
    | of |
    | $\cdots$ |
    | 10 |

    
    
    아 반아야
    
    의를
    炳 $\mathrm{H}_{0}$

    | 仙 |
    | :--- | :--- |
    | 列 |

    0
    $\begin{array}{ll}\text { OXX } & \text { K } \\ \text { 壮 } & \text { 朴 }\end{array}$
    $\square$ 개정시기 ：［법률 제12484호，2014．3．18，일부개정］
    $\square$ 개정이유：「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

[^23]:    居品录
    
    
    这 Hic
    
    $\frac{\pi}{\bar{\sigma}}$
    $\frac{1}{x}$
    
    
    
    일부개정］

[^24]:    개정시기 ：［법률 제12486호，2014．3．18，일부개정］

[^25]:    것으로

[^26]:    개정시기 ：［법률 제12305호，2014．1．21，일부개정］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frac{1}{\frac{1}{x}}$
    6てt01 1 LK
    
    유지되는 사람을
    따른
    효력이
    T
    F
    स

[^27]:    $\square$ 개정시기 : [법률 제12239호, 2014.1.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 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정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
    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8]:    것으로

[^29]:    ■ 개정시기 ：［법률 제12312호，2014．1．21，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0]:    
    ■ 개정이유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 년당 1 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 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square$ 부칙 제 2 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 3 조제 2 항제 2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본다.

    민법 일부개정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